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지원방안

이윤진·최은경



연구보고 2021-09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지원방안

저 자

이윤진, 최은경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 은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기타 기여자

연구협력진 김 현 아 (경기도청 평가기반조성과 주무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09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지원방안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청사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 2672-1535~6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91-3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 의료, 취업, 정착금, 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은 대체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탈북 여성은 탈북 남성보다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월평균 임금 등에서 취약하다. 탈북 여성의 낮은 경제수준의 원인으로는 관련 요인 중에서도 “육아”가 큰 이유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탈북 여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사회로의 “이주”라는 공통점을 가진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제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5.5%, 62.5%로 탈북 여성의 55.7%, 49.3%보다 높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이유를 찾고자 했다. 연구결과, 일·가정 양립을 하고 있는 두 집단 여성들의 공통점은 일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본인뿐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가 건강하였다. 또, 주양육자의 출퇴근 시간이 규칙적이고 직장, 교육·보육기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우며 근무시간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잘 맞았다.

차이점은 탈북 여성이 배우자 또는 대리양육자의 부재가 많아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관련 지표에서 결혼이민자 여성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리양육자 부재에 따른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보육기관의 연장보육(방과 후 수업)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정착, 아이돌보미 우선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현장에서 지원해 주신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면담조사에 참여하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과 결혼이민자 어머니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1
4. 선행연구	15
5. 연구범위 및 용어 정의	18
II.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 결혼이민자 여성과 비교	21
1. '이주' 여성 현황 및 지원정책 개요	23
2.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33
3.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35
4. 일반 유자녀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39
III.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 : 결혼이민자 여성과 비교	43
1.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애로점	45
2.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애로점	66
IV. 결론 및 정책제언	91
1. 결론	93
2. 정책제언	97
참고문헌	99

부록 **103**

부록 1. 심층면담조사 질문지 (탈북 여성)	103
부록 2. 심층면담조사 질문지 (결혼이민자 여성)	105



표 목차

〈표 Ⅰ-3-1〉 본 심층면담조사 참여 탈북 여성의 일반적 특성	12
〈표 Ⅰ-3-2〉 본 심층면담조사 참여 탈북 여성 자녀의 일반적 특성	13
〈표 Ⅰ-3-3〉 본 심층면담조사 참여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반적 특성	13
〈표 Ⅰ-3-4〉 본 심층면담조사 참여 결혼이민자 여성 자녀의 일반적 특성	14
〈표 Ⅰ-5-1〉 관련 법령에서의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의	18
〈표 Ⅱ-1-1〉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 현황	24
〈표 Ⅱ-1-2〉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현황(입국 시 연령 기준)	24
〈표 Ⅱ-1-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25
〈표 Ⅱ-1-4〉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개요	26
〈표 Ⅱ-1-5〉 연도별 취업률(2012~2019)	28
〈표 Ⅱ-1-6〉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1년~'23년) 구성	28
〈표 Ⅱ-1-7〉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2016년~2020년)	30
〈표 Ⅱ-1-8〉 성별·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2020년 기준)	30
〈표 Ⅱ-1-9〉 2021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정책과제	31
〈표 Ⅱ-1-10〉 과제 및 예산 현황	32
〈표 Ⅱ-2-1〉 제3차 기본계획('21년~'23년)에서 2021년 탈북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추진계획: 부처별	33
〈표 Ⅱ-2-2〉 제3차 기본계획('21년~'23년)에서 2021년 탈북 여성 양육지원(여가부) 추진계획	35
〈표 Ⅱ-3-1〉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관련 정책별 소관부처	35
〈표 Ⅱ-3-2〉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관련 정책별 소관부처	37
〈표 Ⅲ-1-1〉 주요 경제활동 지표 및 경제활동 상태	46
〈표 Ⅲ-1-2〉 직장에서의 지위(종사상 지위)	49
〈표 Ⅲ-1-3〉 주요 경제활동 지표 및 경제활동 상태	50
〈표 Ⅲ-1-4〉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51
〈표 Ⅲ-1-5〉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근속기간	52
〈표 Ⅲ-1-6〉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및 수료여부	53
〈표 Ⅲ-1-7〉 임금근로자 구직경로(복수응답)	55
〈표 Ⅲ-1-8〉 여성 취업장애요인(1순위)	55
〈표 Ⅲ-2-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	67
〈표 Ⅲ-2-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종사상 지위	69

〈표 Ⅲ-2-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주당 근로시간	70
〈표 Ⅲ-2-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구직 경로	71
〈표 Ⅲ-2-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구직시 어려움(복수응답)	73
〈표 Ⅲ-2-6〉 다문화가구 자녀 수	74
〈표 Ⅲ-2-7〉 다문화가구 자녀의 연령 분포	74
〈표 Ⅲ-2-8〉 다문화가족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	75
〈표 Ⅲ-2-9〉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의 학교 정규수업 후 교육활동(복수응답)	75
〈표 Ⅲ-2-10〉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5세 이하 자녀양육의 어려움	76
〈표 Ⅲ-2-1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6~24세 자녀양육의 어려움(1+2순위)	77
〈표 Ⅲ-2-12〉 자녀 양육을 위해 모국의 부모형제를 초청하거나 자녀를 모국의 부모 형제에게 보낸 경험(복수응답)	78
〈표 Ⅲ-2-1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혼인상태	79
〈표 Ⅲ-2-1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80
〈표 Ⅲ-2-15〉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81
〈표 VI-1-1〉 탈북 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주요 지표 비교분석	96



그림 목차

[그림 II-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27
[그림 II-1-2] 취업지원사업 추진 체계	27
[그림 II-1-3]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비전, 목표, 6대분야 및 정책과제	29
[그림 III-1-1] 재직 사업체 유형	47
[그림 III-1-2] 직업유형	48
[그림 III-1-3] 직업교육훈련 미수료 이유	54
[그림 III-2-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직종 분포	68
[그림 III-2-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임금수준	71
[그림 III-2-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원 서비스별 이용 경험(복수응답)	82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사회의 탈북 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은 “이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이들의 경제활동 지표를 비교하면, 결혼이민자 여성은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지만, 경제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5.5%, 62.5%로 탈북 여성의 55.7%, 49.3%보다 높음.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정책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탈북민 정책같은 지원금 제도는 없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초등학생 저학년 이하)를 둔 탈북 여성 중 일·가정 양립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가능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같은 조건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례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나. 주요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심층면담조사: 어린 자녀(영유아~초등학생 저학년 이하)를 키우면서 취업 활동 중인 북한이탈주민 여성 5명과 결혼이민자 여성 5명을 심층 면담함.
- 연구협력진 구성
-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결혼이민자 여성과 비교

가. 인구학적 현황

- 2021년 6월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총 33,788명(남성 9,455명, 여성 24,333명). 여성의 비율이 72%를 차지함.

- 탈북 여성의 연령 분포를 보면, 30~39세가 약 29%로 가장 많고, 20대 28%, 40대 19% 순임. 20~40대 가임기 연령대 여성이 약 76%를 차지함.
- 2020년 기준 결혼이민자는 168,594명임. 이 중 여성이 137,878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81.8%를 차지함. 결혼이민자 여성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46,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0,863명, 일본 13,351명, 필리핀 11,499명 등의 순임.

나. 일·가정 양립 정책

-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1~'23)에서 정책과제 “4.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지원”에 속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의 시행계획 “[4]-3 탈북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탈북 여성에 초점을 둔 취업정책임.
- 제3차 기본계획('21~'23)에서 정책과제 “5.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에 속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의 시행계획 “[5]-10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한 탈북 여성 보육지원” 부분이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탈북 여성을 위한 양육정책임.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결혼이민자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고용부는 집단상담, 내일배움카드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함. 여성가족부는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활동 계획 수립, 경력개발부터 취업 후 직장 적응까지 통합 사례관리를 확대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착 단계별 영농교육과정 및 1:1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농촌지역 미래 인재 육성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 등 여성 예비 창업자 발굴, 경력단절여성 창업 교육 지원, 여성 창업입문과정 운영 등 창업을 지원함.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양육 지원 관련 사업은 세 번째 정책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에 집중되어 있음.

3.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 결혼이민자 여성과 비교

- 결혼이민자 여성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약 74%이지만, 탈북 여성은 2020년 기준으로 절반이 채 안 되는 46.4%임.
- 탈북 여성은 남한 입국 전에 북한이나 중국(제3국)에서 결혼한 경우가 많음. 결혼이민자 여성의 대부분은 한국 배우자와의 결혼이 초혼이지만, 탈북 여성은 한국 배우자와 재혼, 삼혼의 경우도 적지 않음.
- 탈북 여성은 늦은 나이에도 출산하는 경우가 많음. 본 면담 조사의 참여 기준인 “영유아~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취업모”에 부합한 5명의 탈북 여성의 평균 연령은 41.8세인 반면, 5명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평균 연령은 31.8세로 나이 차이가 상당히 큼.
-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는 1.02명으로 실태조사에서 공식 집계되었으나, 탈북 여성의 자녀 수에 대한 공식 자료는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 수만 평균 2.3명으로 보고됨.
-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탈북 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 두 집단 모두 일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건강하다는 공통점을 지님. 또한 자녀와 배우자의 건강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임.
-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탈북 여성,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직장, 교육·보육기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많음. 참고로 임금근로자 종사가가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음.
- 여성의 근무시간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서로 잘 맞을 때, 일·가정 양립이 수월함. 한부모 가정의 경우(탈북 여성 가정) 돌봄 공백 시간을 최소화하는 기제가 필요한데 근무시간과 교육·보육기관의 이용 시간의 부합 정도는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직장은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있었음.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월 200만원이 안 돼서 생활비로 소비하고 저축은 못함. 이보다 더 벌려면 야근, 특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녀돌봄 공백 시간이 발생해서 자녀의 안전, 식사, 학습지원 등을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딜레마에 놓이게 됨.
- 초등 저학년 자녀들은 혼자서 등하교하며, 초등 돌봄도 오후 4~5시 이전까지

만 이용해서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 동안은 태권도, 국어, 수학, 학습지 학원을 “혼자서 알아서 시간 맞춰” 다니고 있음.

- 본 면담 조사에 참여한 두 집단의 취업경로를 비교하면, 탈북 여성은 지인 소개, 인터넷 검색, 하나센터 등 취업경로가 다양했으나 결혼이민자 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연차, 월차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배우자가 가사나 육아를 지원하는 경우가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한층 더 지지함. 여기에 정부의 취업정책, 육아 친화적 회사의 배려도 큰 도움이 됨.
- 정리하면, (조부모, 형제자매 등) 믿고 맡길만한 대리양육자가 부재한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은 본인뿐 아니라 자녀, 배우자가 건강하고, 자녀양육을 해결할 수 있는 외적 조건들이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함.

4. 정책제언

- 대리양육자가 부재한 탈북 여성에게 자녀양육의 가장 큰 버팀목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임. 이는 결혼이민자 여성도 마찬가지임. 어린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의 거주지 배정 시,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 지역을 우선 추천하고,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탈북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선 입소 순위를 부여함. 이에 어린이집 1순위 입소순위 자격에 탈북 가정의 영유아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 현재 정부는 ‘기본반’과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연장 보육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녁 시간까지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님. 제도가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취업활동을 하는 주양육자의 자녀를 저녁시간까지(19시 30분) 보육하는 일은 당연한 서비스이자 책무임을 인식하게 하는 캠페인 홍보 활동을 실시함.
- 탈북 여성들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제2차에 이어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유일한 보육지원정책으로 기술되어 있음. 현장과 괴리되는 정책이므로 수정이 필요함.

-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추진하려면 정책수요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시할 것을 제안함. 혼자서 등하교를 하는 탈북 가정의 초등 저학년 자녀들의 안전과 돌봄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함.
- 탈북 여성, 결혼이민자 여성 모두 취업 정보를 지인의 소개나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 경우가 가장 많음. 하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 고용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을 대중매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예컨대, 탈북민들이 많이 접하는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을 홍보함.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탈북 여성, 탈북 가정, 자녀양육 관련 정책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함. 탈북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특성이 세심히 반영되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정책 입안자는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예전에 온 탈북민들이 결혼, 출산하면서 모집단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선행연구
- 05 연구범위 및 용어 정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 6월 기준 총 33,788명으로 이 중 72.0% (24,333명)가 여성이다. 이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가 가장 많고, 20대, 40대 순으로, 20대~40대 가임기 여성이 전체 탈북 여성의 약 76%를 차지한다.¹⁾

북한이탈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참가율(남성 74.1%, 여성 55.7%)과 고용률이 낮고(남성 70.6%, 여성 49.3%), 임금도 낮다(남성 270.3만원, 여성 204.7만원).²⁾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취업 활동이 필요조건이지만, 매년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계속해서 “육아부담”으로 취업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참조).

탈북 여성은 남한 정착 과정에서 혼인,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 여성의 배우자 절반 정도가 남한 출신이며(남북하나재단, 2021a: 155) 영유아 자녀의 국적은 대부분 남한이라는(이윤진·김화순·김민주, 2020; 이윤진·이정림·김경미, 2012)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가정 대상의 실태조사나 통계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가정의 규모, 전체 자녀수, 출산한 자녀 수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탈북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취업 활동을 못하면서 정착 초기에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에 의존하며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윤진 외(2012)의 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경우가 55.0%로 받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다(이윤진 외, 2012: 20). 2016년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탈북민 고용상황 보고에 의하면, 남한 정착 5년 미만 집단과 5년 이후 집단을 비교한 결과 후자 집단의 임금, 고용 지위 등 고용 관련 지표가 전자 집단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1) 본고의 II장 참조바람.

2) 본고의 III장 참조바람.

나타났다(김화순, 2019).

남한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취업이 필수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통일부는 정착장려금, 고용지원금,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학력·자격 인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료직업훈련, 훈련 중 수당 지급, 취업 알선을 위한 취업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주요 사업 내 취업지원사업운영, 검색일: 2021.11.28.).

그런데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받은 적 있음” 50.4%, “받은 적 없음” 49.6%(남북하나재단, 2021a: 107)로 두 집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받은 적 있음: 남성 40.1%, 여성 53.6%, 남북하나재단, 2021a: 107), 앞서 언급한 바처럼 여성의 경제적 지표는 남성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우리 사회에는 “이주”라는 공통점을 지닌 결혼이민자 여성 집단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는 168,594명으로 탈북 여성 24,333명보다 약 7배 정도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은 결혼을 전제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약 74%이고(여성가족부, 2019: 67), 자녀 수는 1.02명으로(여성가족부, 2019: 41) 합계출산율을 상회한다. 탈북 여성과는 달리,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인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을 보면, 각각 65.5%, 62.5%로³⁾ 탈북 여성의 55.7%, 49.3%보다 높다.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정책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탈북민 정책처럼 지원금제도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초등학생 저학년 이하)를 둔 탈북 여성 중 일·가정 양립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가능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같은 조건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례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본고의 III장 참조바람.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전반적인 지원정책을 고찰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도 고찰하였다.

둘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는 취업정책과 자녀양육지원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도 개략적이거나 고찰하였다.

셋째, 어린 자녀를 두고 취업 활동 중인 탈북 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을 파악하였다.

넷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탈북 여성 취업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가장 최근의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 관련 정부 발간 관련 정책자료(예: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정착지원실무편람,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정부에서 실시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예: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및 관련 주제의 선행연구를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나. 심층면담조사

어린 자녀(영유아~초등학생 저학년 이하)를 키우면서 취업 활동 중인 탈북 여성 5명과 결혼이민자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⁴⁾.

주요 면담내용은 취업 현황(직종, 직위,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 자녀양육현황(영유아 자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여부, 이용시기, 기관종류, 비용 등/ 초등학

4) 본 연구는 연구기간 3개월 미만의 연구비 700만원의 소형 수시과제임.

생 자녀: 정규수업 후 돌봄현황, 사교육비 등), 배우자 및 대리양육자 유무, 배우자의 가사 참여도 등이다.

본 심층면담조사에 참여한 탈북 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I-3-1 참조). 나이는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으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연령으로는 나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입국년도가 가장 빠른 경우는 사례 1로 2005년이고, 가장 최근에 온 경우는 사례 2로 2018년이다. 이들 여성은 임신 모두 건강하며 사례 2, 3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의 국적은 남한(사례 1, 4)과 중동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다(사례 5). 직업은 생산직 종사가 많았고(사례 2, 3, 4) 사례 1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사례 5는 자영업자이다.

〈표 I-3-1〉 본 심층면담조사 참여 탈북 여성의 일반적 특성

사 례 번 호	본인							배우자			
	나이	최종 학력	입국 년도	결혼 연도	건강 상태	직업	취업 기간	나이	최종 학력	출신 국가	건강 상태
1	40	대졸	2005	2012	양호	사무직 (기간제 근로자)	2년	49	대졸	남한	시각 장애 6급
2	37	고졸	2018	2009	양호	생산직 (정직원)	2년 6개월	한부모 가정		북한	-
3	39	고졸	2017	-	양호	일용직 (사업자)	3년	한부모 가정		중국	-
4	48	고졸	2011	2017	양호	생산직 (정직원)	5개월	56	고졸	남한	양호
5	45	대졸	2012	2015	양호	자영업 (고용원 없음)	5년	39	대재 휴학	중동	양호

주: 1) 자녀 수는 현재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임.

2) 사례 3 결혼연도는 밝히기를 꺼려함.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 수는 최소 1명(사례3, 4)에서 최대 3명(사례 5)이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4). 자녀 국적은 남한, 북한, 중국 등으로 다양하며, 사례 5의 자녀 3명의 국적은 모두 달랐다. 영유아 자녀 모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으며 주양육자(탈북 여성)를 대신해서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대리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사례 1뿐이다(표 I-3-2 참조).

〈표 I-3-2〉 본 심층면담조사 참여 탈북 여성 자녀의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자녀 수	자녀 구분	성별	나이	국적	건강 상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여부	대리양육자 유무
1	2	A	남	6세	남한	양호	직장어린이집	유(시댁)
		B	여	8세	남한	양호	초등학교	
2	2	C	여	5세	북한	양호	국공립어린이집	무
		D	남	11세	북한	양호	초등학교	
3	1	E	여	9세	중국	양호	초등학교	무
4	1	F	남	8세	남한	양호	초등학교	무
5	3	G	남	5세	남한	양호	국공립어린이집	무 (큰 자녀가 동생 돌봄)
		H	남	12세	중국	양호	초등학교	
		I	여	20세	북한	양호	고3	

본 심층면담조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I-3-3 참조). 면담참여자 중 네 사례(사례 1, 2, 3, 5)는 베트남 출신이고, 한 사례(사례 4)는 라오스 출신이었다. 결혼 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총 4사례(사례 2, 3, 4, 5)이고, 10년 이상인 사례도 있었다(사례 1). 연령대는 20대가 2사례(사례 3, 5), 30대가 3사례(사례 1, 2, 4)였다. 가장 젊은 여성이 26세(사례 3)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이 38세(사례 1)이었다. 탈북 여성보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렸다. 학력은 모두 고졸이며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는 2사례(사례 2, 4)였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는 3사례(사례 1, 3, 4)였다. 배우자의 나이는 결혼이민자 여성과 최소 10살에서 최대 20살 이상 많았다. 사례 3과 4는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았고, 배우자의 학력을 모르는 경우도 두 사례가 있었다(사례 2, 5).

〈표 I-3-3〉 본 심층면담조사 참여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반적 특성

사 례 번 호	본인								배우자		
	나이	최종 학력	출신 국가	결혼 연도	건강 상태	직업	취업 기간	국적 취득	나이	최종 학력	건강 상태
1	38	고졸	베트남	2009	양호	조리 도우미	3년 8개월	×	51	고졸	양호
2	30	고졸	베트남	2013	양호	생산직	8개월	○	40	-	양호

사 례 번 호	본인								배우자		
	나이	최종 학력	출신 국가	결혼 연도	건강 상태	직업	취업 기간	국적 취득	나이	최종 학력	건강 상태
3	26	고졸	베트남	2017	양호	생산직	6개월	×	47	중졸	양호
4	37	고졸	라오스	2012	양호	생산직	1년 4개월	○	52	중졸	양호
5	28	고졸	베트남	2015	양호	생산직	4년	×	49	-	양호

주: 사례 2, 5는 배우자의 학력을 모름.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다. 자녀 수는 1사례(사례 5)는 1명 이었고, 나머지 4사례(사례 1, 2, 3, 4)는 모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사례 5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다(사례 2의 둘째 제외). 현재 영유아 자녀만 둔 사례는 3사례(사례 2, 3, 5)이고, 영유아기 자녀와 학령기 자녀를 둔 사례는 2사례(사례 1, 4)이다. 자녀의 성별은 남녀 각각 2명, 7명이었다 (표 I-3-4 참조).

〈표 I-3-4〉 본 심층면담조사 참여 결혼이민자 여성 자녀의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자녀 수	자녀구분	성별	나이	국적	건강상태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이용여부
1	2	J	여	7세	남한	양호	국공립어린이집
		K	여	9세	남한	양호	초등학교
2	2	L	여	3세	남한	양호	-
		M	남	7세	남한	양호	국공립어린이집
3	2	N	여	2세	남한	양호	(같은)국공립어린이집
		O	여	3세	남한	양호	
4	2	P	여	6세	남한	양호	국공립어린이집
		Q	여	8세	남한	양호	초등학교
5	1	R	남	5세	남한	언어치료 중	국공립어린이집

주: 자녀수는 현재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임.

다. 연구협력진 구성

본 연구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심층 면담조사 참여자 사례선정 및 정책방안 자문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연구협력진으로 구성하여 도움을 받았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원내 멘토링 포함)

연구 초기 단계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한 원외 전문가 및 원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멘토링을 실시하였다(원외 전문가는 비대면으로 실시). 연구 종료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 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마.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본 수시 과제는 통일부 제안 과제이므로 통일부 담당 공무원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4. 선행연구

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일·가정 양립 관련 선행연구⁵⁾

육아정책연구소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박원순·김동훈·김승진, 2016; 이윤진·이정림·김경미, 2012). 이윤진 외 연구(2012)에서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학습지도의 어려움, 북한과 다른 양육문화, 기관 및 대리양육자의 부재 등을 규명했으며(이윤진 외, 2012: 102), 이들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하나센터나 북한이탈주민재단(남북하나재단)에서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이윤진 외, 2012: 136). 이들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에 초점을 두고 수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탈북 여성의 취업 현황을 비중 있게 다루지는 못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취업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최정호와 최희의 연구(2017), 정영애와 김윤나의 연구(2013)가 있다. 전자 연구에서는 취학 자녀 교육지원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출산과 육아 기간을 고려한 정착지원금 제도 연장(최정호·최희, 2017: 126) 및 젠더 관점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제시하였다(최정호·최희, 2017: 126). 후자 연구에서는 취업장려금, 직업훈련수당 등 지

5) 해당 부분은 이윤진·김화순·김민주 (2020).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0-02)의 pp. 25-27 부분을 재정리함.

원금을 현실성 있는 지원으로 전환의 필요성(정영애·김윤나, 2013: 101), 대리 양육을 해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지원을 주장하였다(정영애·김윤나, 2013: 113-114).

일·가정 양립이 더욱 어려운 한부모 가정(여성 9명, 남성 1명)을 대상으로 남한 내 적응의 어려움과 대처방식을 고찰한 조영아·김현아·김요완의 연구(2014)에 따르면 한부모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리양육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적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선권 및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조영아 외, 2014: 173). 또한, 자녀양육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보육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의 자립 장려제도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조영아 외, 2014: 174).

나.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관련 선행연구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경험 및 실태,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 방향 등을 제안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박현성과 홍달아기의 연구(2016)에서는 취업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박현성·홍달아기, 2016: 67). 이들의 주된 어려움은 피로감,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자책감과 불안이었다. 그럼에도 일이 주는 자신감, 뿌듯함, 자유로움 등의 긍정적인 감정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취업은 단지 경제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정체성을 찾아가는 경험으로도 의미가 있었다(박현성·홍달아기, 2016: 88). 김이선·최진희·황정미의 연구(2018)에서도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자녀 돌봄이 집중된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취업을 미루더라도 가사와 양육 부담의 양립 가능성이 있다면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김이선 외, 2018: 124-125).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자녀양육과 가사 부담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취업에 대한 요구와 경제활동 참여 의지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살펴본 연구(김미현, 2019)에서는 결혼 이민자 여성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여성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해서 자녀와의 의사소통, 학교숙제 도와주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양육에 대한 시댁식구의 지나친 간섭과 무시는 결혼이주 여성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현, 2019: 17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현, 2019: 174). 같은 맥락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정착 지원과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제도는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이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육수현과 장주영(2021)은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9명의 실무자를 면담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파악한 결과, 초청된 본국 가족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양육 이외에도 정서적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육수현·장주영, 2021: 45). 본국 가족 초청을 통해 결혼이민자는 원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고, 나아가 적극적 사회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육수현·장주영, 2021: 63).

한편, 이현주와 장동현(2016)은 개인요인, 직무요인, 문화요인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이현주·장동현, 2016: 3). 나이가 많을수록 일·가정 양립의 긍정적 요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자녀 수는 많을수록 부정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가 자신의 기술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고향에 대한 향수병은 부정적 요인을 높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았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 현황을 분석한 연구(유진희, 2020)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지원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취업 활동은 단순히 소득 창출 기능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개인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결혼이민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유진희, 2020: 214). 같은 맥락에서 안일선(2021)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가족 구성원의 이해와 협조,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

여성 모국의 언어와 문화 이해 교육, 취업지원 기관의 홍보 및 전문성 등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안일선, 2021: 123, 129).

종합하면, 결혼이민자 여성은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자녀양육과 가사 부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있어서 일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5. 연구범위 및 용어 정의

본 연구의 연구범위 및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문화 체제에서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남북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통일부, 2021: 8). 본 연구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준용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을 구분하여 접근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비교 분석 대상인 다문화가족 여성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여성으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다문화가족 여성이 출산한 자녀로 국적과 무관하며 연령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로 제한한다.

〈표 I-5-1〉 관련 법령에서의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의

구분	정의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법 ⁶⁾ 제2조

구분	정의	근거 법령
결혼이민자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해당법령 인출 (검색일: 2021.11.23)

공식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지만, 과제 제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 ‘탈북 여성’ 용어를 혼용한다.

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식적으로 축약한 용어임.

II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 결혼이민자 여성과 비교

- 01 '이주' 여성 현황 및 지원정책 개요
- 02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 03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 04 일반 유자녀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II.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 결혼이민자 여성과 비교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정책 개요를 살펴보고, 지원정책 중에서 탈북 여성 관련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우리 사회로의 ‘이주’라는 공통 경험에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현황, 지원정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비교하였다.

1. ‘이주’ 여성 현황 및 지원정책 개요

가. 북한이탈주민 여성⁷⁾ 현황 및 지원정책 개요

1) 인구현황

2021년 6월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총 33,788명이다(남성 9,455명, 여성 24,333명). 이 중 여성이 72.0%를 차지한다.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입국자 수가 남성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표 II-1-1 참조). 2009년 연간 3,000명 가까이 입국하는 등 증가했다가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접경지역 통제강화 등으로 입국 인원이 감소하는 추이였고,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까지 겹쳐 역대 최저 인원인 229명이 입국하였다(통일부, 2021: 9).

탈북 여성의 연령 분포를 보면, 30-39세가 약 29%로 가장 많고, 20대가 약 28%, 40대가 약 19% 순이다. 20~40대 가임기 연령대 여성이 약 76%를 차지한다.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는 여성이며 여성 내에서 20~4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II-1-2 참조).

7) 탈북 여성과 혼재해서 사용함.

〈표 II-1-1〉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명, %

연도	~'98	~'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여성비율	12.2	45.8	55.3	63.1	67.0	69.4	74.6	77.6	78.3	77.3	75.4	70.6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계	
남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20	9,455	
여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16	24,333	
합계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36	33,788	
여성비율	73.1	75.6	78.2	80.3	78.7	83.3	85.2	80.7	68.6	44.4	72.0	

자료: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9.

〈표 II-1-2〉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현황(입국 시 연령 기준)

단위: 명,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08	1,630	2,654	2,128	1,460	600	364	9,444
여	601	1,961	6,780	7,605	4,788	1,547	1,034	24,316
합계	1,209	3,591	9,434	9,733	6,248	2,147	1,398	33,760
여성비율	3.6	10.6	27.9	28.8	18.5	6.4	4.1	100

자료: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10.

주: 1)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일부 인원 제외

2) 2021년 6월말 기준

2) 정착지원제도 개요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지원제도의 개요는 다음의 〈표 II-1-3〉와 같다. 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초기 거주지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임대아파트와 같은 주거지 지원, 취업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 지원을 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은 학비가 기본적으로 면제이다(사립대 진학 시 50%만 지원).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을 배정한다.

〈표 II-1-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지급
	장려금	취업장려금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요건에 따라 지급
주거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6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기타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 지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우미	-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
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0명), 취업보호담당관(6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900명)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ystem/> (검색일: 2021.11.28.)

3) 취업지원제도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 취업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II-1-4〉와 같다. 취업지원제도에 있어 기본 틀은 유지하되,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 부터는 정착장려금 중에서 취업 장려금을 제외한 직업훈련장려금과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미래행복통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표 II-1-4 참조). 변화 이전에는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에 총 500시간 이상의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에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에게 1회에 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지원제도로 인해 직업훈련의 장기화 및 취업기피 관행이란(통일부, 2020: 97)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해당 지원제도를 수정하였다.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한 인원은 2015년의 10명으로 시작해서 매년 증가하여 2020년 12월 기준으로 2,099명이다(관계부처합동, 2021.5.: 44).

〈표 II-1-4〉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개요

제도(시행기관)		2014.11.28.까지 입국자	2014.11.29.부터 입국자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무료직업훈련제공 - 훈련기간 중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취업시 취업촉하금 지급	
취업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		- 전국 67개 고용센터에서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등 지원	
정착 장려금 (통일부)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취업장려금 지급(수도권 최대 1,650만원, 지방 최대 1,950만원)	
	직업훈련 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총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직업훈련장려금 지급	해당 없음
	자격취득 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	해당 없음
고용지원금 (통일부)		- 탈북민 고용기업에 지급, 임금의 1/2을 기본 3년(최대 4년) 동안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 - 고용센터에서 신청, 통일부(하나원) 에서 지급	해당 없음
자산화성제도 '미래행복통장' (남북하나재단)		해당 없음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지원요건)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 중일 것 등 (적립목적) 주택구입비(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지원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학력·자격 인정 (통일부)		관계법령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학력·자격 인정	

자료: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80.

4) 전달체계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는 다음의 전달체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그림 II-1-1 참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이다. 통일부가 총 23개 중앙부처·기관·지자체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을 협의·조정하여 총괄 추진한다. 거주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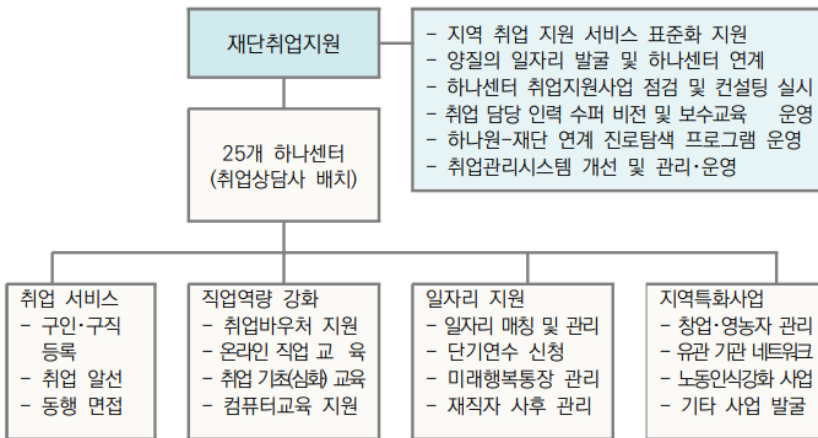
[그림 II-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자료: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14.

[그림 II-1-1]의 전달체계에서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취업 지원사업 전달체계는 다음 [그림 II-1-2]과 같다.

[그림 II-1-2] 취업지원사업 추진 체계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54.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성과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재단의 취업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구직자의 취업률은 2017년 64.2%, 2018년 65.9%, 2019년 69.4%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표 II-1-5 참조).

〈표 II-1-5〉 연도별 취업률(2012~2019)

단위: 명, %

구분	구직 등록	구인 등록	알선	취업	취업률 (취업/구직)
2012	1,235	968	1,458	405	32.9
2013	1,597	1,605	1,521	594	37.5
2014	1,812	1,257	1,097	763	42.1
2015	2,508	2,008	1,853	1,244	48.8
2016	2,540	2,801	2,203	1,428	56.2
2017	2,466	3,344	2,220	1,523	61.8
2018	2,375	2,478	2,034	1,659	69.9
2019	2,444	2,487	2,230	1,696	69.4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56.

5)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가장 최근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제3차 기본계획(2021~2023)이다.⁸⁾ 앞서 전달체계에서 진술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23개 기관의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6개 분야 총 5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1: 1)(표 II-1-6 참조).

〈표 II-1-6〉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1년~’23년) 구성

목표	정책과제(분야)	세부과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①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5
	② 탈북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8
	③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9
	④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지원	9
	⑤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13
	⑥ 정착지원 시설 및 인력 기반 강화	7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1.5.).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p.1.

제3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의

8) 정부는 2014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12월에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을 발표한 이후, 매 3년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음(관계부처 합동, 2021: 1).

성격으로 수립하였다(통일부 보도자료, 2021.5.18.: 2).

요컨대, 제3차 기본계획은 2차 기본계획의 기조인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원” (국정과제 94-4)을 계승하면서(통일부 보도자료, 2021.5.18.: 1-2) ‘탈북민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참여·협업, 탈북민의 복합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통일부 보도자료, 2021.5.18.: 2).

[그림 II-1-3]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비전, 목표, 6대분야 및 정책과제

비전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	
목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우리사회 환경 조성 생산적 기여자로서 탈북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 통일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의 안착	
6 대 분 야 24 개 정 책 과 제	1.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1-①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1-② 탈북민 단체 지원 및 소통 확대 1-③ 탈북민 정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2-① 지자체의 참여·역할 확대 2-② 탈북민 지원기관 간 소통·협업 강화 2-③ 비대면 정착지원 시스템 공고화 2-④ 탈북민 보호 체계 내실화 2-⑤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강화
	3.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3-① 수요 맞춤 개인별 서비스 확대 3-②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3-③ 심리상담 및 전문분야 교육 지원
	4.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4-①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4-② 탈북민 취업지원 협업체계 강화 4-③ 자산형성 지원제도 안착 4-④ 탈북민 채용유인제도 개선
	5.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5-① 입국 초기 적응지원 5-② 정규학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적응 강화 5-③ 탈북대학생 교육지원 사업 개선 5-④ 대안교육시설 지원 내실화 5-⑤ 탈북학생 잠재역량 강화 지원 5-⑥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5-⑦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6.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6-① 참여형·맞춤형·실용적 하나원 교육 운영 6-② 하나센터 운영 내실화 및 인력 역량 강화

자료: 통일부 보도자료 (2021.5.18.), 「제3차(2021~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p. 3.

나. 결혼이민자 여성 현황 및 지원정책 개요

1) 인구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2021)에 따르면, 결혼이민자⁹⁾는 2016년 152,374명에서 2020년에는 168,594명으로 증가하였다(표 II-1-7 참조).

〈표 II-1-7〉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2016년~2020년)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현황	152,374	155,457	159,206	166,025	168,594
(전년대비)	(100.5%)	(102.0%)	(102.4%)	(104.3%)	(101.5%)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 54.

2020년을 기준으로 여성이 137,878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81.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46,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 40,863명, 일본 13,351명, 필리핀 11,499명 등 순이었다(표 II-1-8 참조).

〈표 II-1-8〉 성별·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미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러시아(연방)	타이완	캐나다	영국	기타
전체	168,594 100%	60,072 35.6%	44,058 26.1%	14,595 8.7%	12,002 7.1%	5,929 3.5%	4,638 2.8%	4,312 2.6%	2,625 1.6%	2,486 1.5%	1,800 1.1%	1,472 0.9%	1,397 0.8%	1,120 0.7%	12,088 7.2%
남자	30,716 (18.2%)	13,823 23.0%	3,195 7.3%	1,244 8.5%	503 4.2%	111 1.9%	466 10.0%	3,083 71.5%	164 6.2%	180 7.2%	132 7.3%	127 8.6%	1,141 81.7%	976 87.1%	5,571 46.1%
여자	137,878 (81.8%)	46,249 77.0%	40,863 92.7%	13,351 91.5%	11,499 95.8%	5,818 98.1%	4,172 90.0%	1,229 28.5%	2,461 93.8%	2,306 92.8%	1,668 92.7%	1,345 91.4%	256 18.3%	144 12.9%	6,517 53.9%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 56.

9) 결혼이민자란 국민과의 혼인 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 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 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자격 소지자 ※ 귀화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귀화자)는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제외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 4.)

결혼이민자 여성의 거주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9,59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20,131명, 경상남도 9,172명, 인천광역시 8,849명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거주자가 50.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58). 한편, 2020년 혼인귀화자는 6,717명으로 전체 귀화자의 48.4%를 차지했다. 혼인귀화자의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53.9%로 가장 많았고, 중국 28.6%, 필리핀 5%, 캄보디아 4.3% 등의 순이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66).

2) 지원정책 개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시책을 담아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8: 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도모’의 3대 목표 아래 5개 영역,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있다(여성가족부, 2018: 1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5대 과제는 ①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②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④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⑤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이다(여성가족부, 2018: 13-26).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b: 3) (표 II-1-9 참조).

〈표 II-1-9〉 2021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 내용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② 국제결혼 피해 예방 지원 ③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④ 서비스 연계 활성화

정책과제	세부 내용
2.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① 자립역량 강화 ②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사회참여 기회 확대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③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④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①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③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④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①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②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자료: 여성가족부 (2021b).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p. 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는 총 1,330개(중앙부처 119개, 지자체 1,211개)이고, 예산은 총 5,847억원(중앙부처 4,695억원, 지자체 1,152억원)이다.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며 취·창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사업은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과제 및 예산의 세부 현황은 <표 II-1-10>과 같다.

<표 II-1-10> 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세부과제명	소요예산(백만원)		과제수(개)	
	'20년	'21년	'20년	'21년
합계	562,929	584,705	1,207	1,330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363,002	384,160	313	355
2.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54,556	63,360	268	310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102,020	70,202	275	282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15,649	17,249	251	282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 강화	23,420	32,324	89	90
(대책과제)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지원	4,282	17,410	11	11

자료: 여성가족부 (2021b).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p. 7.

2.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가. 취업지원정책

제3차 기본계획('21~'23)에서 정책과제 “4.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지원”에 속하면서(그림 II-1-2 참조), 관계부처 합동의 시행계획 “④-3 탈북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부분이 탈북 여성에 초점을 둔 취업정책이다(관계부처합동, 2021.5.: 38).¹⁰⁾ 해당 정책의 담당부처는 여가부, 고용부, 통일부이다(관계부처합동, 2021.5.: 38). 부처별 2021년 추진계획과 예산은 다음 <표 II-2-1>와 같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고용센터(고용노동부), 남북하나재단(통일부) 등 3개 부처의 관할 기관에서 탈북 여성의 취업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표 II-2-1> 제3차 기본계획('21년~'23년)에서 2021년 탈북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추진계획: 부처별

부처	추진계획	세부내용	예산
여가부	전국 158개 새일센터를 통해 탈북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지속 제공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새일센터 지정·운영 67,830백만원 *탈북민 대상 별도 예산 미편성
고용부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에 따라 직업훈련·직업진로지도·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국민내일배움카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역량 향상지원 - 적극적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을 통한 탈북민 취업을 제고	내일배움카드 214,504백만원 *탈북민 대상 별도 예산 미편성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여성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 탈북민 여성에 맞는 구직처 알선·동행면접 등 지원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2,274백만원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1.5.).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p. 38.

10) 정책과제 “4.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지원” 부분의 세부과제로는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통일부, 산어부, 인천시, 경기도), 맞춤형 영농정착지원(통일부, 농식품부), 단기연수 참여 기회 확대(통일부, 지자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대(고용부, 통일부), 전문직 탈북민 맞춤형 육성사업 강화(통일부, 인사처, 서울시), 탈북민 취업지원 협업체계 강화(통일부), 자산형성제도 운영(통일부, 인천시), 탈북민 채용유인제도 개선(통일부) 등 총 9개 과제가 있음(관계부처합동, 2021.5.: 34-45).

나. 자녀양육정책

제3차 기본계획('21~'23)에서 정책과제 “5.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에 속하면서(그림 II-1-2 참조) 관계부처 합동의 시행계획 “[5] -10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통한 탈북 여성 보육지원” 부분이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탈북 여성을 위한 양육정책이다(관계부처합동, 2021.5.: 56).¹¹⁾ “5.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의 세부과제는 총 13개가 있지만¹²⁾, 어린 자녀의 양육지원정책은 이 과제가 유일하다. “탈북 여성을 포함하여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지원 중”으로 되어 있으나,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총 251,493백만원 중 북한이 탈주민 대상으로 별도 예산은 미편성되어 있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이용한(이용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 대한 통계도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1.5.: 56).

그리고 <표 II-2-2>의 세부내용에서 연간 정부지원 시간과 지원 비율 확대는 2021년도 개편된 것으로 탈북 가정만이 아닌 일반 가정을 포함한 것이다(여성가족부, 2021a: 1).

11) 정책과제 “4.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지원” 부분의 세부과제로는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통일부, 산어부, 인천시, 경기도), 맞춤형 영농정착지원(통일부, 농식품부), 단기연수 참여 기회 확대(통일부, 지자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대(고용부, 통일부), 전문직 탈북민 맞춤형 육성사업 강화(통일부, 인사처, 서울시), 탈북민 취업지원 협업체계 심화(통일부), 자산형성제도 운영(통일부, 인천시), 탈북민 채용유인제도 개선(통일부) 등 총 9개 과제가 있음(관계부처합동, 2021.5.: 34-45).

12) 나머지 12개 과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12개 과제를 보면, 정규학교 적응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교육부, 통일부), 탈북학생 학교 적응력 제고(통일부),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원(교육부), 탈북학생 특성화학교 지원(교육부, 통일부),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운영, 탈북대학생 교육지원사업 운영 내실화(교육부), 교육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 지원(통일부), 대안교육시설 재학 탈북청소년 대상 법교육(법무부), 가족단위프로그램 청소년 정착지원(교육부, 여가부, 통일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경기도), 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과 치유지원 및 양성평등·인권보호 교육실시(여가부),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통일부)가 있음(관계부처합동, 2021.5.: 46-59).

〈표 II-2-2〉 제3차 기본계획(‘21년~’23년)에서 2021년 탈북 여성 양육지원(여가부) 추진계획

부처	추진계획	세부내용	예산
여가부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탈북 여성 자녀양육 지원 지속 추진	해당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 취업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가능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총 251,493백만원 *탈북민 대상 별도 예산 미편성
	- 북한이탈주민가정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 비율 확대	- 시간(연): 720→840시간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저소득 (중위소득 75%이하)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지원(+5%)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1.5.).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p. 56.

3.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가. 취업지원정책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 ‘도입·성장기’에서 ‘정착기’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초기적응 중심에서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여성가족부, 2021b: 3). 다시 말해, 결혼이민자들의 장기정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초기적응 지원 중심에서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다양한 사회진출 및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11).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주도적인 사회적 참여 기회 제공을 확대하였다(여성가족부, 2021b: 1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 지원 관련 사업은 두 번째 정책과제인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에 집중되어 있다(표 II-3-1 참조).

〈표 II-3-1〉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관련 정책별 소관부처

정책과제	세부과제명 및 내용	소관부처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1. 자립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① 결혼이민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②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③ 한국어 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정책과제	세부과제명 및 내용	소관부처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④ 사회통합교육 콘텐츠 내실화 및 접근성 제고	법무부
	⑤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를 통한 고등 교육 기회 안내	교육부
	2.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기초교육 내실화	여성가족부
	②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의 지속적 발굴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③ 결혼이민자 선호 언어·종목을 중심으로 다국어 자격 검정 실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④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⑤ 결혼이민자 창업 및 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⑥ 결혼이민자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취·창업 지원	고용노동부
	3.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 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지자체
	②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다양화	여성가족부
	③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운영	농촌진흥청
	④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지원	여가부, 문체부, 법무부

자료: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pp. 16~19.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립역량 강화,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는 세 가지 영역의 주요 과제가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b: 13).

먼저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역량 강화, 취업 연계, 미래설계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민·관협력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대상 부모학교 및 ICT 교육반을 운영하여 자립역량 향상을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시 다문화 강사 양성, 지역 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등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결혼이민자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신규 교재 활용 및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결혼이민자 여성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b: 13).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고용부에서는 집단상담(새일센터 20개소), 내

일배움카드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활동계획 수립, 경력개발부터 취업 후 직장 적응까지 통합 사례관리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착단계별 영농교육과정 및 1:1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농촌 지역 미래 인재 육성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 등 여성 예비 창업자 발굴, 경력단절여성 창업 교육 지원, 여성 창업 입문과정 운영 등 창업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1b: 13-14).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창업 지원정책의 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이다(여성가족부, 2021b: 159-181).

나. 자녀양육정책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양육 지원 관련 사업은 세 번째 정책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표 II-3-2 참조).

〈표 II-3-2〉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관련 정책별 소관부처

정책과제	세부과제명 및 내용	소관부처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1.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①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산	여성가족부
	②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③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④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통한 위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① 이중 언어 인재 양성 사업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②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 교육부
	③ 글로벌브릿지 사업 추진	교육부
	④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정책과제	세부과제명 및 내용	소관부처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① 진로인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 기회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② 학교 진로 활동실 확충	교육부
	③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 활성화	KOTRA·외교부
	④ 직업교육훈련기관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고용노동부
	3-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①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 내실화 및 질적 수준 제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② 중도입국자녀의 조기 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 다양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③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④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학력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교육부
	⑤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강화	교육부
	⑥ 다문화청소년 취업사관학교 운영 및 훈련 확대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pp. 19~22.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학업·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중도입국 자녀 맞춤형 지원이라는 네 가지 영역의 주요 과제가 시행되고 있다.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성,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청소년 안전망 확충 및 Wee센터·Wee클래스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학생 이해를 위한 원격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교육제도 안내 책자 및 다문화학생 대상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작한다. 또한,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한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에서는 자녀발달단계별 부모교육 및 상담, 자녀의 인성 함양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에 따른 자녀양육 및 성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1b: 15).

다음으로,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이중언어 인재 발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KOTRA는 이중언어를 활용한 무역전문교육 지원 및 채용상담회 개최를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해 기술교육 대안학교를 운영한다(여성가족부, 2021b: 16).

마지막으로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레인보우스쿨을 세분화하여 정착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안정적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상담통역지원사를 양성하고 심리사회적응척도를 개발 및 보급하여 진로와 심리진단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중학교 배정현황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모니터링 추진으로 공교육 진입을 보장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현장교원과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기반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및 보급한다(여성가족부, 2021b: 16).

4. 일반 유자녀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정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 사업이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목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21: 11-12).

현재 새일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158개(광역센터 포함)가 설치되어 있다(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21: 11-12). 총 예산은 1101.8억원으로, 여성가족부 678.3억원, 고용노동부 117.1억원, 지방자치단체 306.4억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21: 11-13).

새일센터의 주요 업무는 구인·구직 상담, 취·창업 알선 및 연계, 인턴십 지원,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운영, 인력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취업자 사후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자 경력 관리 및 구업업체 발굴, 새일센터 사업 홍보 등이다(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21: 15).

나. 아동돌봄정책¹³⁾

1) 아동 관련 수당

현재 만 7세(84개월) 미만 모든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이정림·구자연·최윤경·정정호, 2020: 43)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미취학 86개월 미만)에게 지급하는(보건복지부, 2021: 371) ‘가정양육수당’이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월 10만원~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371). 두 수당 모두 현금 지원이다(이정림 외, 2020: 43).

2) 교육·보육 기관 이용 지원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만 0~5세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연령에 따라 월 34만3천원~47만원 지원), 유아(만 3~5세)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누리과정비 월 2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시간당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¹⁴⁾. 이외에도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야간연장 보육료,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토요일을 제외한 휴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360-370).

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원받는 경우, 수혜자(주양육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수혜자(주양육자)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기관으로 지급하는 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3) 가정 내 양육지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인 가정 내 양육지원이다. 양육공백 발생 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13) 해당 내용은 연구소에서 수행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방안』 I, II 시리즈 연구 보고서들에서 상세하게 다뤘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발췌, 요약함.

14) 시간당 지원 단가는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으로 영유아당 지원함 (보건복지부, 2021: 357).

파견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 및 이용 방식(시간제 vs 종일제)에 따라 비용을 달리 지원하고 있다(이정림 외, 2020: 44). 비용지원은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로 본인 부담금을 카드사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선입금하면 나머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여성가족부, 2021a: 17).

4)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영양플러스사업이 있다(이정림 외, 2020: 46-47). 전자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기저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월 8만6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한다. 후자는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며 현물지원이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은 각각 모든 영유아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실시하고 있다(이정림 외, 2020: 46-47). 이외에도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구의 경우 의료비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의 선천성 대상 이상 검사 지원 및 만 19세 미만 환아 관리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정림 외, 2020: 49).

5) 취약계층 통합지원 서비스

취약계층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임산부 포함) 대상의 드림스타트사업,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이 가능한 가구 또는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가구자활사업),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저소득 가구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이 있다(이정림 외, 2020: 51). 이들 사업은 취약 가구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 보건, 복지, 상담, 취업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이정림 외, 2020: 51).

III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 : 결혼이민자 여성과 비교

01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애로점

02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애로점

Ⅲ.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 : 결혼이민자 여성과 비교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탈북 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의 면담 조사를 비교한 결과를 담았다. 아울러, 두 집단의 취업 및 양육 관련한 실태조사 자료를 정리, 제시하였다.

1.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애로점

가. 취업 및 자녀양육 실태조사 분석

1) 경제활동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현황을 알 수 있는 관련 지표들을 보면(표 III-1-1 참조), 2020년 전제 기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약 60%, 비경제활동비율 약 40%, 고용률 약 54%, 실업률은 약 9%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2% 하락했고, 실업률은 약 3% 늘어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상황이 2019년에 비해 다소 안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코로나19 영향이 크게 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상황이 더 안 좋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56%로 남성 약 74%보다 현저히 낮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경제활동비율과 실업률 지표 모두,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중에서 40대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모두 높은 특징을 보였다. 남한 거주기간별로 보면, 3년 미만 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가장 낮고 비경제활동비율, 실업률은 가장 높다.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 증가하지만, 3년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역 간의 경제활동 지표 간 두드러진 차이는 없다.

〈표 III-1-1〉에서 경제활동 상태도 지표와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대비 올해 취업자 비율은 감소하고 실업자 비율은 증가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상태도 더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일할 의사가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도 여성이 훨씬 많다(남성 25.8%, 여성 43.7%). 비경제활동율과 비경제활동을 보면, 30대가(10대와 60대 제외) 40대보다 높게 나온 점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30대는 왕성하게 일을 할 연령대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30대가 비경제활동이 높은 주요 이유가 출산과 양육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표 III-1-1〉 주요 경제활동 지표 및 경제활동 상태

단위: %

전체	경제활동 지표				경제활동 상태				
	경제 활동 참가율	비경제 활동 비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 활동 (취업자)	경제 활동 (실업자)	비경제 활동	판별 불가	계
2020	60.1	39.9	54.4	9.4	53.7	5.6	39.4	1.3	1000
2019	62.1	37.9	58.2	6.3	57.4	3.9	37.4	1.4	1000
성별									
남성	74.1	25.9	70.6	4.7	70.1	3.4	25.8	0.7	1000
여성	55.7	44.3	49.3	11.4	48.6	6.3	43.7	1.5	1000
연령대									
15~19세	12.5	87.5	10.4	16.2	10.4	2.0	87.2	0.4	1000
20대	56.8	43.2	50.0	12.0	49.0	6.7	42.4	1.9	1000
30대	63.8	36.2	58.2	8.8	57.6	5.6	35.8	1.0	1000
40대	68.7	31.3	61.8	10.0	61.2	6.8	31.0	1.0	1000
50대	68.3	31.7	62.7	8.2	61.4	5.5	31.0	2.2	1000
60대이상	31.1	68.9	28.9	7.2	28.7	2.2	68.4	0.7	1000
남한거주기간									
3년미만	52.6	47.4	45.0	14.5	44.9	7.6	47.2	0.3	1000
3~5년미만	60.6	39.4	54.7	9.7	53.8	5.8	38.8	1.7	1000
5~10년미만	61.1	38.9	56.2	8.1	55.0	4.9	38.1	2.0	1000
10년이상	61.3	38.7	55.6	9.3	55.1	5.7	38.4	0.9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1a).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p. 111~112.

2) 취업 현황

가) 재직 사업체 및 직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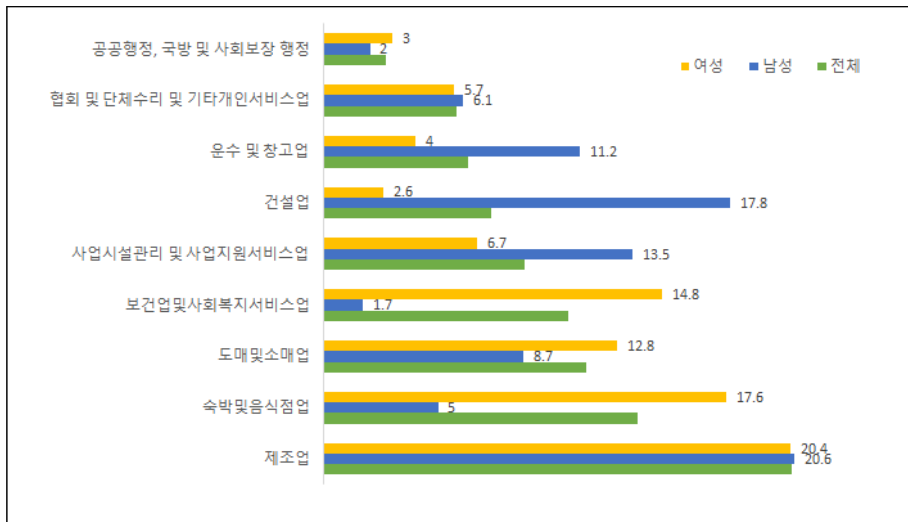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재직하고 있는 사

업체 유형은 제조업이며(20.5%), 숙박 및 음식점업(13.%), 도매 및 소매업(11.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7%)이 뒤를 잇는다(남북하나재단, 2021a: 114).

성별에 따라 재직 사업체가 확연히 달랐는데 제조업은 남녀 모두 1순위로 나왔지만(남성 20.6%, 여성 20.4%), 2순위부터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17.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8%), 도매 및 소매업(12.8%) 순으로 나온 반면, 남성은 건설업(17.8%)이 2순위로 많았으며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3.5%), 운수 및 창고업(11.2%) 순이었다(남북하나재단, 2021a: 114).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의 남성 종사자 비율은 한 자리 수치에 불과하다(그림 III-1-1 참조).

[그림 III-1-1] 재직 사업체 유형

단위: %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1a).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p. 114~115 표를 도식화함.

주: 1) 재직 사업체 종류가 많아서 비율이 높게 나온 상위권 업체 중심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업체는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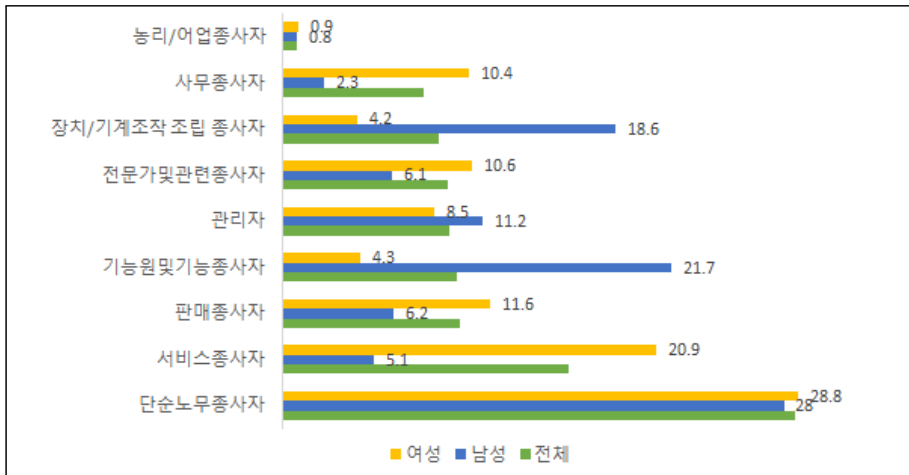
2) 숫자는 여성과 남성만 표기함

2020년 기준으로 직업유형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 16.0%로 2순위를 차지하며 판매종사자 9.9%,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9.7%, 관리자 9.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 순이다(남북하나재단, 2021a: 114). 직업유형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큰데, 남녀 공통으로 단순노

무종사자가 1순위로 가장 많으나, 2순위에서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20.9%)가 많은 반면,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20.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2순위 직업의 여성 종사자는 4.3%에 그쳤다(남북하나재단, 2021a: 118)(그림 III-1-2 참조).

[그림 III-1-2] 직업유형

단위: %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1a).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p. 118~119 표를 도식화함.

주: 숫자는 여성과 남성만 표기함

나) 종사상 지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의 약 83%는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약 17%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지위는 상용직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일용직, 임시직 순이며 비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인 것을 알 수 있다(표 III-1-2 참조).

남성보다 여성이 임금근로자 종사자가 많았고, 상용직 비율도 높아서 취업한 탈북 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안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영유아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40대를 살펴보면, 30대는 임금근로자가 40대는 자영업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II-1-2 참조).

남한거주기간이 길수록 임금근로자 비율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비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직장에서의 지위(종사상 지위)

단위: %

전체(취업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계
		상용 직	임시 직	일용 직				
2020	82.7	58.6	11.9	12.2	17.3	16.4	0.9	100.0
2019	84.3	55.3	13.2	15.8	15.7	14.6	1.2	100.0
성별								
남성	63.6	54.1	9.5	17.8	18.5	18.5	0.1	100.0
여성	73.6	60.6	13.0	9.7	15.5	15.5	1.2	100.0
연령대								
15~19세	78.9	36.4	42.5	21.1	0.0	0.0	0.0	100.0
20대	71.1	54.6	16.5	17.6	10.5	10.5	0.9	100.0
30대	71.9	62.1	9.8	12.1	15.6	15.6	0.3	100.0
40대	67.9	58.8	9.1	12.1	19.4	19.4	0.6	100.0
50대	74.6	60.1	14.5	7.8	15.5	15.5	2.2	100.0
60대이상	61.8	45.9	15.9	16.6	21.6	21.6	0.0	100.0
남한거주기간								
3년미만	79.4	66.6	12.8	16.0	4.6	4.6	0.0	100.0
3~5년미만	81.5	70.0	11.5	11.6	5.0	5.0	1.9	100.0
5~10년미만	72.5	60.1	12.4	11.7	15.0	15.0	0.8	100.0
10년이상	64.9	53.5	11.4	11.9	22.2	22.2	1.0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1a).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 120.

주: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합친 값임.

다) 평소 주당 근로시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의 약 85%는 평균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3 참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6.2시간으로 집계되어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무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정보다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주당 근로시간이 짧다. 30대가 40대보다 36시간 미만 근로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적다. 남한거주기간별로 보면, 대체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III-1-3〉 주요 경제활동 지표 및 경제활동 상태

단위: %

전체(취업자)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계	평균(시간)
2020	15.5	84.5	100.0	46.2
2019	18.1	81.9	100.0	46.5
성별				
남성	8.2	91.8	100.0	49.2
여성	18.8	81.2	100.0	44.8
연령대				
15-19세	49.2	50.8	100.0	34.0
20대	22.8	77.2	100.0	42.2
30대	17.9	82.1	100.0	45.1
40대	12.5	87.5	100.0	47.9
50대	11.0	89.0	100.0	46.8
60대이상	19.1	80.9	100.0	49.0
남한거주기간				
3년미만	16.2	83.8	100.0	44.9
3~5년미만	13.2	86.8	100.0	44.9
5~10년미만	16.0	84.0	100.0	46.9
10년이상	15.3	84.7	100.0	46.1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1a).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 121.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이유 1순위는 ‘육아’로 나타났다(2020년 기준). 2019년에는 1순위가 ‘건강’이었다. 성별에 따라 이유가 확연히 달랐는데, 여성은 육아가 약 26%로 가장 많았지만, 남성은 0.0%로 한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남성은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이유로 재직 사업체에서 “일거리가 많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건강하지 못해서 36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육아’를 가장 많이 꼽았고(40대는 육아와 건강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옴), 2순위로는 40대는 건강을, 30대는 재직 사업체에 ‘일거리가 없어서’를 꼽았다. 20대는 ‘학교/학원을 다녀야 해서’가 1순위였다. 전 연령대에서 본인이 원해서 또는 가사(집안일)로 일을 짧게 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남한거주기간이 길수록 ‘육아’를 이유로 꼽은 경우가 많았고 ‘건강’은 거주기간과는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다(표 III-1-4 참조).

〈표 III-1-4〉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단위: %

전체 (취업자)	육아	건강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평소 일거리가 많이 없어서	학교/ 학원을 다녀야 해서	내가 원해서	가사	기타	계
2020	22.0	18.3	18.0	16.9	16.1	7.0	0.9	1.0	100.0
2019	22.3	25.0	17.9	8.9	12.8	5.7	3.2	4.2	100.0
성별									
남성	0.0	14.3	16.7	36.5	20.7	11.0	0.0	0.9	100.0
여성	26.3	18.8	18.2	13.1	15.2	6.2	1.0	1.1	100.0
연령대									
15-19세	0.0	0.0	8.9	27.8	49.6	13.7	0.0	0.0	100.0
20대	16.0	1.1	16.3	16.7	36.8	13.1	0.0	0.0	100.0
30대	37.3	10.6	12.7	17.1	11.8	9.5	0.9	0.0	100.0
40대	28.2	28.1	14.7	12.2	13.8	3.0	0.0	0.0	100.0
50대	0.0	27.5	33.2	21.9	7.9	4.2	4.3	1.0	100.0
60대이상	0.0	40.2	26.8	20.8	0.0	0.0	0.0	12.2	100.0
남한거주기간									
3년미만	7.9	21.7	6.7	28.4	20.6	14.7	0.0	0.0	100.0
3~5년미만	4.3	22.8	13.1	14.1	21.9	17.0	4.5	2.3	100.0
5~10년미만	27.7	10.3	18.3	13.5	23.5	5.0	1.6	0.0	100.0
10년이상	22.7	23.5	21.1	17.7	7.5	5.5	0.0	2.0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1a).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 122.

라) 임금근로자의 임금·근속기간·구직경로

앞서 고찰했듯이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월평균 약 216만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의 약 205만원보다 11만원 가량 상승하였다(남북하나재단, 2021a: 125). 이는 일반국민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 268.1만원보다 52만원 낮은 수준이다(남북하나재단, 2021a: 55)(표 III-1-5 참조). 여성은 남성보다 약 65만원 가량 낮으며 30대가 약 230만원으로 가장 임금이 높았다. 남한거주기간별로 보면, 5~10년 미만이 가장 높았고, 3년 미만이 가장 낮았으나, 그 차이는 16만원으로 크지 않았다.

근속기간은 평균 약 32개월로, 2년 8개월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근속기간은 약 4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근속기간이 약 6개월 짧은 30개월로 보고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길고, 60대 이상이 다음을 차지했다. 왕성하게 일을 해야 하는 40대는 약 34개월, 30대는 29개월로 50대 이상

의 노령 연령대보다 근속기간이 짧았다. 30~40대의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은 앞서 분석한 ‘육아’가 주요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5〉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근속기간

단위: 만원, 개월, %

전체(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근속기간	계
2020	216.1	31.6	100.0
2019	204.7	27.7	
성별			
남성	270.3	35.5	100.0
여성	204.7	29.9	100.0
연령대			
15~19세	123.3	4.6	100.0
20대	199.3	14.6	100.0
30대	229.9	29.0	100.0
40대	223.7	33.7	100.0
50대	209.0	41.4	100.0
60대이상	182.9	39.0	100.0
남한거주기간			
3년미만	204.3	10.6	100.0
3~5년미만	213.3	17.1	100.0
5~10년미만	220.2	29.8	100.0
10년이상	216.0	42.2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1a).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p. 125~126 표를 재구성함.

주: 월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 기준임.

마) 직업교육 이수 경험 및 구직 경로 등

(1) 직업교육 이수 경험

취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직업교육 경험과 구직경로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경제적 자립은 남한의 안정적 정착의 필요조건이란 점에서 탈북민의 취업 정책은 중요하다.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법(제 16조) 및 시행령(제32조, 33조, 49조),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통일부, 2021: 85). 또한, 직업훈련장려금과 자격취득장려금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우(50.4%)와 받지 않은 경우(49.6%)로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는 더 많으나, 수료한 경우는 남성보다 낮았다(표 III-1-6 참조).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높고, 30~40

대가 다음으로 높았다. 이들 대부분은 참여한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료 비율은 대체로 10%대 미만이나, 10대와 60대를 제외한 연령대 중에서 30대의 미수료 비율이 약 11%로 가장 높았다.

남한거주기간 3년 미만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가 약 66%로 훨씬 더 많았고, 5~10년 미만이 받은 경우가 약 58%로 가장 많았다. 직업훈련을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6〉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및 수료여부

단위: %

전체(경험여부), 수료여부(직업교육훈련 경험자)	경험여부		수료여부			계
	있음	없음	수료함	교육중	미수료	
2020	50.4	49.6	89.3	2.2	8.5	100.0
2019	51.4	48.6	89.4	2.2	8.3	
성별						
남성	40.1	59.9	91.9	1.2	6.9	100.0
여성	53.6	46.4	88.7	2.4	8.9	100.0
연령대						
15~19세	4.4	95.6	64.2	15.3	20.5	100.0
20대	32.2	67.8	81.5	9.4	9.2	100.0
30대	54.3	45.7	87.4	1.3	11.3	100.0
40대	54.5	45.5	90.3	2.2	7.4	100.0
50대	61.8	38.2	93.5	0.9	5.6	100.0
60대이상	45.0	55.0	89.3	0.5	10.2	100.0
남한거주기간						
3년미만	34.3	65.7	74.5	11.4	14.1	100.0
3~5년미만	50.6	49.4	86.9	5.0	8.1	100.0
5~10년미만	57.7	42.3	90.5	1.0	8.5	100.0
10년이상	48.5	51.5	91.4	1.1	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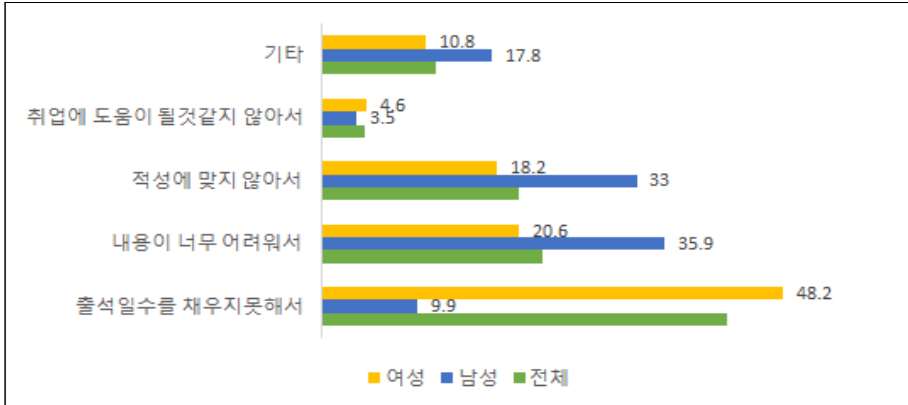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1a).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 107.

주: 경험여부에서 '있음'은 현재 받고 있음을 포함한 것임.

직업훈련을 미수료한 가장 큰 이유는(2020년 기준) “질병, 결석 등으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서”(42.3%)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23.0%) “적성에 맞지 않아서”(20.5%) 순이었다(남북하나재단, 2020: 108). 성별에 따른 차이가 컸는데 여성은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서”가 약 48%로 가장 많았지만, 남성은 해당 응답은 9.9%에 불과했다. 남성이 미수료한 가장 큰 이유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였다(그림 III-1-3 참조).

[그림 III-1-3] 직업교육훈련 미수료 이유

단위: %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1a).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 108 표를 도식화함.

주: 숫자는 여성과 남성만 표기함.

한편, 직업교육훈련을 수료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알아본 결과, “일한 적이 없음”(52.0%)이 “일한 적 있음”(47.5%) 보다 많았다(남북하나재단, 2021a: 109). 이 역시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수료한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3.5%로, 남성 45.5%보다 많았다(남북하나재단, 2021a: 109).

(2) 구직경로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직경로를 알아본 결과(중복 응답), 신문, 잡지, 광고와 같은 대중매체가 가장 많았고, 북한이탈주민 또는 非북한이탈주민의 친척, 친구, 동료와 비슷한 비율로 2, 3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구직경로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공적 경로보다는 개인 경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시청/군청/구청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은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취업알선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경우가 2019년에 비해 늘어났다. 정부부처 중에서는 통일부 산하의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고용노동부/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보다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표 III-1-7 참조).

〈표 III-1-7〉 임금근로자 구직경로(복수응답)

단위: %

전체 (임금 근로자)	대중 매체	탈북민 친척, 친구, 동료	非탈 북민 친척, 친구, 동료	민간취 업알선 기관	남북하 나재단 /하나 센터	고용노 동부/ 고용센 터 등	학교 학원 추천 소개	시청, 군청, 구청 일자리 센터	여성새 로일하 기센터	기 타
2020	27.6	22.4	22.2	15.4	13.4	12.9	5.0	4.5	1.2	5.0
2019	34.6	22.6	22.7	5.3	14.1	6.3	3.8	3.9	1.3	4.4
성별										
남성	24.7	24.7	28.2	16.4	14.0	12.3	3.5	3.0	0.0	4.1
여성	28.9	21.4	19.5	14.9	13.1	13.1	5.7	5.2	1.8	5.3
연령대										
15~19세	18.2	7.7	24.0	26.6	13.2	0.0	19.4	0.0	0.0	5.7
20대	26.3	25.3	17.9	23.6	10.0	8.3	10.2	1.6	0.0	4.3
30대	26.4	21.4	24.9	14.4	13.6	13.4	3.7	2.8	0.2	7.7
40대	29.3	20.2	24.5	16.0	12.5	11.1	2.8	6.1	2.3	3.3
50대	26.8	24.5	18.6	11.1	17.8	18.5	7.3	5.6	2.1	4.7
60대이상	31.1	57.6	19.9	11.4	8.8	11.3	1.7	7.1	0.0	3.8
남한거주기간										
3년미만	26.4	28.3	13.8	16.4	25.2	13.9	2.1	3.8	0.0	2.6
3~5년미만	22.8	26.8	22.0	12.6	21.9	13.8	4.2	1.5	1.2	5.1
5~10년미만	28.4	24.6	22.4	15.2	13.7	13.8	5.2	5.3	1.1	3.7
10년이상	28.1	17.9	24.4	15.9	8.0	11.5	5.9	4.6	1.7	6.8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1a).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 128.

바) 취업 장애요인

북한이탈주민 전체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성별, 연령, 남한거주기간의 상관없이 ‘육아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가족 돌봄(육아제외) 등이 뒤를 이었으나, 비율상 1순위와 차이가 크다(표 III-1-8 참조).

〈표 III-1-8〉 여성 취업장애요인(1순위)

단위: %

전체(전체)	육아 부담	여성 에 대 한 편 견/ 차 별	가족 돌 봄(육 아 제 외)	불 평 등 한 근 로 여 건	구 인 정 보 부 족	가 사 부 담	잘 모 름	기 타	계
2020	45.4	13.9	9.9	7.8	6.5	4.8	8.8	2.9	100.0
2019	43.8	12.6	7.6	9.6	4.1	3.7	7.2	2.1	100.0
성별									
남성	44.7	15.1	8.8	6.8	3.4	6.0	12.6	2.6	100.0
여성	45.6	13.5	10.3	8.1	7.5	4.4	7.6	3.0	100.0

전체(전체)	육아 부담	여성에 대한 편견/차별	가족돌봄(육아 제외)	불평등한 근로 여건	구인 정보 부족	가사 부담	잘 모름	기타	계
연령대									
15~19세	35.2	27.4	7.1	6.1	1.9	3.8	17.3	1.2	100.0
20대	51.0	11.9	8.8	6.1	5.6	3.1	10.3	3.1	100.0
30대	57.7	9.0	12.0	5.6	5.2	4.1	4.8	1.6	100.0
40대	39.1	13.5	12.4	9.9	8.1	5.1	8.8	3.2	100.0
50대	33.1	19.5	8.1	11.2	9.2	4.6	9.5	4.7	100.0
60대이상	50.1	15.8	4.0	4.2	3.0	8.2	12.4	2.3	100.0
남한거주기간									
3년미만	39.7	12.3	15.0	5.2	7.5	5.0	10.8	4.4	100.0
3~5년미만	44.0	12.8	12.2	6.6	7.2	4.9	9.1	3.3	100.0
5~10년미만	44.6	14.9	10.2	7.9	7.5	3.9	7.7	3.3	100.0
10년이상	47.9	13.7	7.9	8.7	5.2	5.4	9.1	2.1	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1b).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p. 80.

나. 취업 및 자녀양육 관련 면담조사 분석

1) 취업 현황

면담에 참여한 탈북 여성의 현재 직장의 근속기간은 사례 1은 2년, 사례 2는 2년 6개월, 사례 3은 3년, 사례 4는 5개월, 사례 6은 5년이였다.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이들 탈북 여성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요인을 도출하고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근무요일·시간·급여 등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근무시간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례 3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 5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으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였다. 사례 3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례 1과 집 근처의 축산업체에서 육가공 일을 하는 사례 2, 그리고 소상공인 회사에 다니는 사례 4는 출퇴근 시간이 규칙적이다. 사례 1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지만, 일의 성격이 본인 적성과 잘 맞아서 만족한다고 했다. 사례 2, 사례 3은 힘이 많이 드는 육체노동이라 힘들기는 하지만, 급여가 높아서 만족스럽다고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기간제 계약이다 보니 야근은 없고,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해서 한 달에 약 170~18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하고 있는 일이 일반 사기업 다녔을 때보다는 저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뭔가 편견 없이 대해주는 곳은 공기업인 것 같아요. 경쟁 심리도 덜 하고(사례 1).

평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해요. 가끔 주말 근무가 있고 야근은 없습니다. 지금 정직원이고.....4대보험 빼면 한달에 217만원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해서는 최저급여 받는 데, 처음에는 4대보험 빼고 160만원 받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받는 거죠(사례 2).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게 없어요. 오늘 일이 여기 있고 내일 일이 저쪽에 있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집주인들이랑 시간 협의를 하고 몇 시까지 와서 해주세요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하고, 장사하는 곳이라면 장사 끝날 시간 맞춰서 가야하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 개념이 없어요.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고 일 있으면 돈 벌고 없으면 못 벌어요. 잘 벌면 월 250만원 정도 벌어요(사례 3).

사례 4는 소상공인 회사의 생산직에 다니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평일에도 잔업으로 2시간을 추가 근무를 해야 해서 9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출근은 아침 8시반에 하고 퇴근은 잔업까지 포함해서 저녁 7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애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토요일 만근하면 많이 타는데, 한 달에 220에서 230만원 받아요, 4대 보험 빼고(사례 4).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례 5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지만, 물건을 쌓아둔 창고에 매일 나간다고 했다.

2016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생활필수품들 옷이나 가방을 창고에 있다가 버리게 되는데 그걸 외국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원래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다가,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판매했어요.....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다고 하면 새벽에도 남편이랑 가고, 밤에도 물건이 있다고 하면 일요일에도 빨리 가야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면 얼마 받는 게 아니고, 벌이가 될 때는 벌고 못 벌 때는 또 못 벌고 하니까요. 코로나 전에는 외국 바이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안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 3월부터는 아예 막혔지만, 그전에는 먹고 살 만했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해서 400~500만 원 정도 벌었죠(사례 5).

나) 취업경로

사례 1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가 설립된 후 입국한 경우들이다. 공공기관이나 하나센터에서 알선해 준 경우는 사례 2, 사례 4였다. 사례 2는 주민 센터를 통해 첫 직장을 얻었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다. 어린 자녀가 있어서 직업학원(학교)도 다니기 어렵다고 했다. 사례 4는 하나센터를 통해 지금의 직장을 구한 경우이다.

하나원을 퇴소하고 동사무소에 거주지를 불이러(전입신고) 가면서 동사무소(주민센터)를 알게 되었고 일자리센터에 취업 등록을 해줬어요. 연락이 와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하나센터는 애가 아침 9시에 학교가고 오후 1시에 데리러 오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못 다녔어요……자격증 따려고 직업학교에 다니려고 해도 애들 있어서 시간이 안 돼서 힘들어요(사례 2).

제가 취업을 해야 하는데 애가 있어서 어려우니까 하나센터에 부탁을 했어요. 다닌 지는 6개월 됐어요(사례 4).

사례 1, 사례 3은 개인적인 경로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취업정보를 알게 된 경우들이다. 사례 1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례 3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했다.

홈페이지 지원하게 됐어요. 공공기관이라 누구 소개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어서 공평하게 공고로, 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하던 경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공고에서 북한이탈주민 자격이 있어서 그 기회로 들어왔어요(사례 1).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들 우연히 알게 돼서 급여가 높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일용직으로 일당 주는 일, 노가다예요. 일당 많이 준다고 해서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겠습니까 하고 시작한 일이 지금 시작한 일이에요(사례 3).

자영업업을 하는 사례 5는 인터넷에서 개인 중고물품을 팔는 일이 확장되면서 지금의 사업까지 하게 된 경우이다.

2016년에 막내를 낳았거든요. 낳고 집에 있자니까 너무 답답하고 돈도 못 버니까 인터넷으로 중고 마켓에 물건을 올려놓고 팔아봤더니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커졌어요. 처음에는 100개 팔고 그다음에는 1,000개 팔고 다음에는 10,000개씩 팔다 보니까, 어떻게 싸게 사서 팔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창고에 있는 이월상품이 있더라고요. 이 정보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죠(사례 5).

2) 자녀양육 현황

가) 영유아 자녀

직장과 집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대리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직장과 집과의 거리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 탈북 여성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고, 퇴근하고 오는 길에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데리고 오거나 어린이집 차량이 집 앞까지 운행해서 자녀를 데리고 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신랑 회사의 직장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일찍 출근을 해서 제가 (운전해서) 차로 아침 8시 반쯤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고, 퇴근하고 가면 6시 20분쯤 데리고 와요(사례 1).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전에 다니던 민간어린이집은 아침 일찍 문을 열지 않아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겼어요. 출근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해요. 퇴근하고 오면서 5시 15분~20분에 찾아와요(사례 2).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사례 3의 자녀가 영유아였을 때, 어린이집과 태권도 학원을 병행 이용하면서 돌봄 공백을 메웠다. 한부모 가정이고 친인척도 없는데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저녁시간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이를 태권도 학원이 도와주었다. 어린이집과 태권도 학원을 병행한 경우는 사례 4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사례 4도 주양육자가 퇴근 전까지의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태권도 학원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주었고, 태권도 학원에서 저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어린이집에 아침 7시에 보냈다가 5시에 하원하고 태권도에 가서 관장님이 10시까지 돌봐 주셨어요 관장님들이랑 놀고, 바로 옆에 학원이 있어서 미술학원이 있어서 거기 원장님이 예뻐해 주셔서 책도 읽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저녁은요?) 관장님이 먹여주셨어요. 같이 챙겨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사례 3).

오후 5시 반에 어린이집에서 태권도로 보내주고 태권도 학원에서 집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줘요. 그때는 제가 김밥집에서 6시까지 일했으니까 아이가 태권에서 6시 반, 7시쯤 집에 와요(사례 4).

본 면담조사에서 자녀수가 3명으로 가장 많은 사례 5는 큰 아이가 20살로 동생 2명(12세, 5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상시는 아니지만 엄마 역할을 해 왔다.

특히, 동생들 공부는 큰 아이가 전담하고 있어서 작은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하지 않고 있었다.

(초등학생) 둘째가 학교에서 오면 한 시간 동안 책을 보고, 누나(큰 아이)가 나가도 된다고 하면 나가서 애들하고 놀다가 6시에 주짓수(학원) 갔다가 7시에 집에 오더라고요. 저는 큰애한테 네 동생을 다 돌보라고 하죠.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사례 5).

사례 5의 영유아 자녀는 단지 내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오후 4시쯤에 배우자(외국인)가 데리러 가서 주양육자(탈북 여성)가 일하는 창고로 데리고 온다고 했다. 창고한 집과의 거리는 차로 10분 정도였다. 참고로 사례 5의 현재 배우자는 초혼이라서 혈육인 셋째 자녀를 많이 예뻐한다고 했다.

어린이집은 아침 10시쯤 갔다가 4시 반쯤 와요. 일찍 데려오는 이유가 어린이집 가서 보니까 애들이 엄마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데려와서 창고에 데리고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애가 혼자 마지막까지 있으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아침에 저는 출근하고 남편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도 데리고 와요. 애 아빠한테는 첫 자식이니까 끔찍이 여겨요. 창고랑 집하고는 차로 10분 정도 걸려요(사례 5).

나) 초등 저학년 자녀

탈북 여성의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은 초등돌봄교실과 (태권도) 학원을 병행해서 해결하고 있었다. 하교 후의 돌봄을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는 없었다. 사례 4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사례 1의 큰 아이는 초등학생 1학년인데 초등돌봄을 저녁 7시까지 운영하지만, 그 시간까지 이용하는 아이들은 없어서 4시쯤 피아노학원을 간다고 했다. 피아노학원에서 어머니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큰 아이의 돌봄공백은 없었다. 그런데 2학년부터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아서 퇴근까지 더 많은 학원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주양육자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은 있지만, 학원을 교육과 돌봄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돌봄은 거의 저녁 7시까지인데 5시 되면 거의 애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4시 반에 피아노 학원에 가요. 수업이 끝나면, 피아노 학원차가 (제) 회사 앞에 애를 내려줘요. 그런데 큰 애가 2학년 올라가면 돌봄이 없어요. 이게 또 걱정이긴 하더라고요. 2학년부터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을 돌려야죠(사례 1).

사례 2의 큰 아이(11세)와 사례 3의 아이(9세)는 학교의 등하교와 학원시간을 혼자서 “알아서” 다니고 있었다. 사례 3은 초등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학원만 이용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인 큰 아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일주일에 2~3번 가는데 초등돌봄으로 매일 가고 있어요. 학교는 혼자 아침에 챙겨서 갑니다……(초등)돌봄에서 오후 2시반까지 있다가 집에 와서 3시 영어학원에 맞춰 (혼자) 갑니다. 영어학원이 4시40분에 끝나는데 끝나고 바로 눈높이 학습지 센터에 가서 오후 6시쯤 옵니다. 큰 애는 엄마 오는 거(출퇴근 하는 거) 신경 안 써요(사례 2).

학교 수업마치고 바로 태권도 가고 갔다 와서, 태권도 차도 안 타고 다니고 자기가 알아서 갔다가 와서 공부해요. 제가 퇴근이 늦거나 학원을 다녔을 때는 10시에 왔는데 그 때까지 혼자있는 경우가 많아요. (걱정안되세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일찍 핸드폰을 사줬고 계속 영상 통화해요(사례 3).

사례 4의 자녀(8세)도 주양육자(탈북 여성)의 출퇴근 시간으로 등하교를 혼자하고 저녁시간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오후 2시까지 이용이라 주양육자의 퇴근시간과의 괴리가 컸다.

아침에 학교를 혼자 가요. 집에서 큰 길을 세 번 건너가야 해요. 제가 8시 반부터 일하는데 애는 9시부터 공부하니까 그래서 핸드폰 알람 켜놓고 나가면 애가 일어나서 챙겨서 학교 가죠. 애가 그런 게 서운한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엄마랑 같이 등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애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방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사례 4).

다) 교육·보육비 및 사교육비

사례 1은 두 자녀의 사교육비로 월 28만원 정도 내고 있었다. 직장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사례 1의 둘째 아이는 직장어린이집에 있다가 축구(일주일에 2번) 학원에 갔다가 다시 어린이집에 온다고 했다. 번거롭지만, 같은 반 아이들이 다 다니고 있어서 안 보낼 수 없다고 했다. 직장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은 없었다.

사교육은 큰애가 피아노 다니고 둘째는 축구 다니고 있어요. 피아노 월 14만원 정도, 축구도 그 정도 내요.……반 친구 엄마가 이런 축구 있는데 보내실 거예요? 이 반에 한 명 빼고는 다 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도 하루 종일 거기에 있는 거 지루해 하니까 보내게 됐어요.……코로나로 지금 어린이집에서 특성화 활동은 안 해요. 코로나 전에 3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특성화 비용은?) 직장어린이집이라 직장 복지로 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을 하진 않아요(사례 1).

사례 2는 두 자녀의 사교육비로 월 46만원 정도(큰 아이 36만원, 작은 아이 10만원) 지불하고 있었다. 사교육비가 부담은 되지만,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아이가 좋아하지 않고, 교육효과가 크지 않아서 학원을 보내고 있었다. 작은 아이가 다니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매달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10만원 정도 낸다고 했다.

큰 애 초등돌봄 이용에는 돈이 지 않고, 학원비를 한 달에 36만원 정도 나가요. 작은애는 (국공립어린이집) 공부(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으로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나가구요. 비용이 부담되기는 하지만 애가 학원을 재밌어하고, 돈을 더 내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 2).

태권도 학원을 저녁 돌봄 공백을 위해 다녔던 사례 3은 월 12만원의 태권도비를 드림스타트 사업과 태권도 학원이 반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만 자부담해서 부담은 없었다고 했다.

학원비 12만원을 드림스타트에서 5만원 지원해주고 학원에서 5만원 지원해주었어요. 10만원을 지원해주면 나머지 차액만 부모가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다녔었고, 최근에는 바우처, 한부모 가정에게 나오는 거, 최근에 알아서 한 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무용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지원으로 영어학원하고 눈높이 학습센터를 무료로 다니고 있어요. 무용이 15만원이고 태권도는 바우처 카드를 빼면 4만원 정도 내고 있어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애가 좋아하니까, 솔직히 애 때문에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이 아깝지 않아요(사례 3).

초등학생 자녀를 둔 사례 4는 사교육비로 월 50만원 이상을 내고 있었다. 둘째가 다녔던 국공립어린이집을 셋째가 다니고 있는 사례 5는 둘째 때는 월 5만원 정도 냈었는데, 지금은 내는 돈이 없다고 했다.

태권도 15만원, 수학, 국어로 2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수학, 국어 학원은 태권도 학원 아래층에 있어서 한 건물에서 다 이용하고 있어요(사례 4).

둘째 때는 5만원씩 냈는데, 막내는 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센터에서 둘째하고 셋째를 3만 3천원짜리 눈높이 한글학습지를 해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전에는 둘째와 셋째 태권도비를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해 줘서 13만원인가 내고 둘이 다녔어요(사례 5).

3) 일·가정 양립 현황

대리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집과 직장과의 거리, 어린이집 이용시간, 근무여건(일정한 출퇴근 시간 등) 등이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급여 수준이 최저 시급을 적용받아 낮지만, 이보다는 직장과의 거리, 어린이집 이용시간, 근무여건이 탈북 여성이 육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주요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직장임) 아이 키우면서 다니기에는 좋아요. 집하고도 가깝고요. 차로 5분 10분 정도 밖에 알 걸려요. 그리고 출퇴근이 규칙적이고 야근도 없고 주말에 갑자기 나갈 일도 없고요. 전에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주말에 행사하면 나가야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그런 건 없으니까요. 대신 (지위가) 불안정하긴 하죠.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사례 1).

사례 3은 집 주변에 어린이집은 없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방에 사는 지인에게 4개월 정도 아이를 맡겼다고 했다. 집 가까이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다는 것은 탈북 여성에게는 일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한편, 보호담당관(형사)이 사례 3에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정보를 알려줘서 딸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이 육아를 위해 작동했던 사례라 하겠다.

처음에 한 100만원 정도 수급이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일하겠다고 했던 게 저한테는 특수사정이 있잖아요. 북한에 가족들을 내가 조금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라도 빨리 일하고 싶었죠. 그때는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내가 일 나가면 ○○를 데리고 출퇴근을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집까지 통학버스가 와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2017년도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뭐 할까 갈팡질팡하다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를 군산에 아는 언니 애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같이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군산까지 애를 데려다 맡긴 거예요.……담당 형사님이 어린이집 때문에 속상해하는 걸 알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그러다 **시 어린이집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알아서 그래서 거기에 애를 보냈어요(사례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운영시간과 수요자(탈북 여성)의 이용시간이 잘 맞는 것도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이다. 사례 1의 경우 집근처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지만, 오후 4시면 아이들이 집에 가고 없고, 본인 자녀만 두게 되면

기관에 눈치가 보여서 남편의 직장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다고 했다.

집 근처에 일반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는데, 요즘 동네 어린이집은 거의 4시면 애들이 없어요. 할머니나 사람을 써서라도 애가 혼자 남아있으면 미움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을 일찍 데리고 가요. 유치원도 거의 3시면 하원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 그 이후 시간에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서 눈치 덜 보게 남편 직장어린이집을 택하게 되었죠(사례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경우에는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보다 수월하였다. 그런데 배우자는 있지만, 본인보다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긴 경우 육아는 탈북 여성의 몫이었다. 사례 4는 어린이집에서 주양육자(탈북 여성)의 출근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오고, 학원시간에 맞춰 학원(태권도)으로 데려다 주면 학원에서는 주양육자의 퇴근시간에 따라 용통적으로 더 봐주기도 해서 도움이 컸다고 했다.

일하면서도 제가 혼자 키웠어요……애가 (작년까지)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6시까지 일했어요. 그때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다가 원장님이 5시쯤에 태권도로 보내주셨어요. 태권도를 보내야 퇴근 시간을 맞출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좋더라고요. 태권도에서 돌봐주니까. 늦어지면 더 돌봐주고. 원래 한 시간이잖아요. 제가 퇴근을 늦게 하면 더 봐주세요.(사례 4).

육아와 취업을 병행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 이유로는 고용주의 배려를 꼽을 수 있겠다. 큰 아이와 함께 남한에 오고, 작은 아이를 일 년 뒤에 북한에서 데리고 온 사례 2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이의 적응 시간이 필요해서 직장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웠는데 회사 사장의 배려로 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작은 애가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두 달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 때 금방 와서 애가 엄마를 못 알아보고 그래서 같이 있었어요. 사장님한테 애를 돌봐야 한다고 하니깐 그럼 돌보고, 시간이 되면 나오라고 해서 출근했어요(사례 2).

반면, 정규직으로 소상공인 회사(근로자 5인 미만)를 다니고 있는 사례 4는 면접에서 반드시 출근은 8시 30분까지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자녀의 저녁 돌봄 공백에 대해 회사에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소상공인 회사라 연차, 월차 사용도 못해서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못할 때 아이 혼자 집에 있었다고 한다.

토요일 근무가 있을 때는, 배우자도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관계로, 자녀를 데리고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제가 면접을 볼 때 정규직으로 들어가니까 꼭 8시 반에 출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인원이 5명 밖에 안 되는 소상공인이라서 연차, 월차 혜택도 없어요. 코로나여서 학교에 안 갔을 때에도 혼자 있었어요. 토요일에 일하러 자주 나가는데 애도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축구학원을 보낼려고 알아봤는데 애가 주말에는 안간데요(사례 4).

사례 1의 배우자는 정규직 신분이고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라서 아이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본인을 대신해서 자녀를 돌본다고 했다. 그러나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여전히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기업에서 육아지원제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신랑도 저랑 똑같이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저보다는 정규직이다 보니까 연차를 쓸 수 있거든요. 아이가 아프면 연차 써서 병원 데려주고 해요. 그렇다고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사례 1).

가사일은 주양육자(탈북 여성)가 주로 담당하고, 도움을 주는 정도는 양부모 가정(사례 1, 4, 5) 중에서 사례 1이 유일했다.

남편이 설거지, 쓰레기 버리는 일은 해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사례 1).

남편이 저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토요일도 근무를 하니까 집안일은 거의 제가 해요(사례 4).

퇴근하고 오면 화장실 청소, 빨래 제가 와서 다 하죠(사례 5).

4) 취업에 대한 의지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초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다.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탈북 여성들은 생계급여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하고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했다. 이 때, 정부의 취업장려정책(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이 근속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장려금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죠. 3년이 지급되는데 지금까지 두 번 받았어요. 처음에는 450만원 받았고, 2년 뒤에는 600만원 받으면서 더 일해야 한다는 힘이 되었어요. 미래행복통장도 (가입해서) 붓고 있어요.……(사례 2).

수급비만 받고 있으면 발전도 없고 계속 아프다고 해야 하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6개월인가 받고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사례 5).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지도 강하게 작용하였다.

처음 와서는 그냥 오직 돈이에요. 북에 있는 가족도 생각해야 하고, 내 새끼가 부모 한번 잘못 만나서 상처받았으니까 무엇으로라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돈으로라도 애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사례 3).

대출 등 빚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양육자의 취업은 가계 경제에 도움이 컸다. 사례 4는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대출을 받아서 큰 평수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 돈을 벌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제가 안 벌고 살 때랑 제가 조금 더 많이 못 벌지만 보태는 거랑 차이가 크죠. 무엇보다 대출을 빨리 갚는다는 거죠(사례 1).

지금 집은 대출받고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해요. 작년 코로나에도 일했어요.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코로나여도 계속 일은 했어요……애도 공부시켜야 하고, 북한에 있는 아들, 친정엄마한테도 돈을 보내야 하구요(사례 4).

2.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애로점

가. 취업 및 자녀양육 실태조사 분석

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5%,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30.5%이다. 이는 18세 이상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3.9%p 높고, 비경

제활동인구 비율은 그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216). 결혼 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6.4%로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3.3% 높은 수준이다.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2.5%, 남성 결혼이민자·귀화자 고용률은 85.3%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 정도 높았다(여성가족부, 2019: 220). 연령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50대(79.5%)와 40대(78.9%)가 유사한 비율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69.8), 29세 이하(56.1%), 60세 이상(51.8%) 순이었다(표 III-2-1 참조).

〈표 III-2-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

(단위: %, 명)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전체		69.5 (194,730)	66.4 (186,050)	4.5 (8,680)	30.5 (85,290)
다문화 가구 유형	결혼이민자	68.2	65.4	4.2	31.8
	기타귀화자	77.1	72.7	5.7	22.9
성별	여성	65.5	62.5	4.6	34.5
	남성	88.8	85.3	3.9	11.2
연령	29세 이하	56.1	52.9	5.7	43.9
	30~39세	69.8	67.2	3.7	30.2
	40~49세	78.9	75.6	4.1	21.1
	50~59세	79.5	75.8	4.7	20.5
	60세 이상	51.8	48.4	6.5	48.2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	40.8	38.1	6.7	59.2
	5~10년 미만	66.6	64.1	3.9	33.4
	10~15년 미만	75.9	72.5	4.4	24.1
	15년 이상	76.9	73.4	4.5	23.1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218-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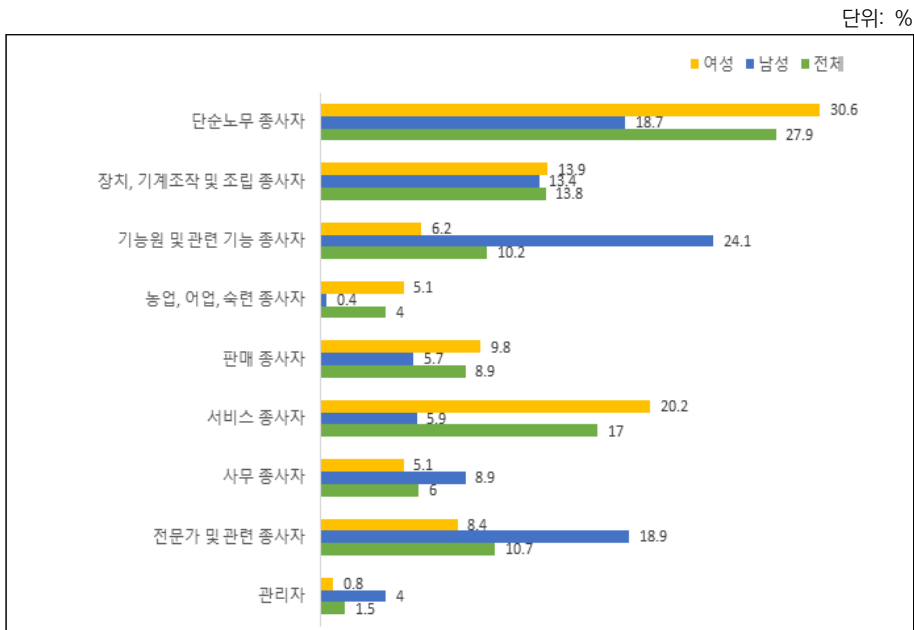
2) 결혼이민자·귀화자 취업 현황

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직종 분포

취업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27.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 17.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8% 등의 순이었다. 결혼이민자·귀화자 여성의 경우에도 단순노무 종사자가 3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 20.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9% 순이었다.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8.4%로 남성 결혼이민자·귀화자(18.9%)보다 크게 낮았다(여성가족부, 2019: 223) (그림 III-2-1 참조).

[그림 III-2-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직종 분포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226-227 표를 도식화 함.

나) 종사상 지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42.3%로 가장 많고, 임시근로자 21.4%, 일용근로자 18.5% 순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자영업자 11.1%(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7.7%), 무급가족종사자가 6.6%를 차지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231).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용근로자 비율은 낮고, 임시근로자 비율은 높으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여성의 종사상 지위가 남성보다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50대, 60세 이상 연령층의 일용직 비율은 각각 30.4%, 40.3%로 40대 이하 연령층에 비해 일용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전체		42.3 (78,731)	21.4 (39,879)	18.5 (34,376)	3.4 (6,321)	7.7 (14,396)	6.6 (12,348)	100.0 (186,050)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41.7	22.3	18.2	3.0	7.4	7.4	100.0
	기타귀화자	45.5	17.1	19.8	5.4	9.7	2.4	100.0
성별	여성	40.9	24.7	16.5	2.8	7.0	8.2	100.0
	남성	47.4	10.0	25.3	5.6	10.4	1.3	100.0
연령	29세 이하	45.8	26.4	14.2	1.8	4.0	7.7	100.0
	30~39세	46.7	21.5	12.4	3.2	8.6	7.6	100.0
	40~49세	42.0	20.5	17.6	5.1	8.6	6.3	100.0
	50~59세	34.7	18.3	30.4	2.9	8.5	5.1	100.0
	60세 이상	27.3	21.0	40.3	2.1	5.9	3.5	100.0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	36.4	30.0	16.6	1.4	4.5	11.1	100.0
	5~10년 미만	43.8	24.3	15.5	2.1	6.0	8.3	100.0
	10~15년 미만	40.7	22.2	19.2	3.2	8.2	6.5	100.0
	15년 이상	44.2	16.1	20.7	5.3	9.4	4.4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232-233.

다) 근로시간

취업한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 75.2%는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8%는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였다. 평균 근로시간은 42.42시간으로 집계되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볼 때,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여성은 27.1%로 남성(1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44.79시간)이 여성(41.74시간)보다 길었고,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국내 거주 기간이 길수록 평균 근로시간이 길었다(표 III-2-3 참조).

〈표 III-2-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주당 근로시간

(단위: %, 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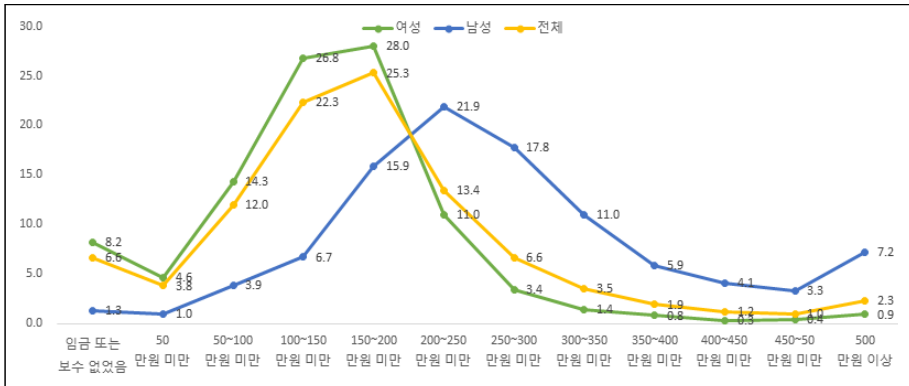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합계	평균
전체		24.8(46,196)	75.2(139,854)	100.0(186,050)	42.42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26.3	73.7	100.0	41.97
	기타귀화자	17.3	82.7	100.0	44.77
성별	여성	27.1	72.9	100.0	41.74
	남성	17.0	83.0	100.0	44.79
연령	29세 이하	26.7	73.3	100.0	40.71
	30~39세	27.1	72.9	100.0	40.59
	40~49세	24.0	76.0	100.0	42.76
	50~59세	19.4	80.6	100.0	46.77
	60세 이상	26.4	73.6	100.0	44.20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	30.2	69.8	100.0	39.28
	5~10년 미만	28.1	71.9	100.0	40.63
	10~15년 미만	24.1	75.9	100.0	42.97
	15년 이상	21.6	78.4	100.0	44.04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229-230.

라) 월평균 임금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월평균 150~200만원 미만이 25.3%, 100~150만원 미만이 22.3%로 47.6%가 100~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이 200~300만원인 이들은 20.0%, 300만 원 이상인 이들은 9.9%이다.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이들은 15.8%, 임금 또는 보수가 없는 이들은 6.6%이다(여성가족부, 2019: 233).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0만원 미만 임금층이 많은 반면, 200만원 이상 임금층은 남성이 더 많았다(여성가족부, 2019: 234)(여성가족부, 2019: 235)(그림 III-2-2 참조).

[그림 III-2-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임금수준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235-236 표를 그림으로 도식화함.

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구직경로 및 구직시 어려움

가) 구직경로

구직경로에 관한 설문에서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28.9%는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중매체나 전단지(18.7%), 나의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13.4%), 한국인 친구나 이웃(11.7%)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결혼이민자·귀화자 여성의 구직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 본인이 직접 창업한 경우도 7.4%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이 구직 통로가 된 경우는 6.5%에 불과했다(여성가족부, 2019: 237)(표 III-2-4 참조).

〈표 III-2-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구직 경로

(단위: %, 명)

	나의 가족, 친척의 소개	배우자 가족, 친척의 소개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	고용 센터 등 공공 기관의 소개	시설 직업 소개 기관을 통해	대중매체 (신문 잡지 등)나 전단을 보고	본인이 직접 창업	기 타	합계
전체	12.3 (22,966)	4.6 (8,611)	29.6 (55,095)	11.7 (21,724)	6.0 (11,144)	7.1 (13,156)	17.9 (33,310)	8.6 (16,061)	2.1 (3,982)	100.0 (186,050)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12.8	5.1	30.5	11.3	6.3	6.8	17.0	8.2	2.2	100.0

		나외 가족, 친척의 소개	배우자 가족, 친척의 소개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	한국인 친구나 이웃의 소개	고용 센터 등 공공 기관의 소개	시설 직업 소개 기관을 통해	대중매체 (신문, 잡지 등)나 전단지 를 보고	본인이 직접 창업	기 타	합계
	기타귀화자	10.2	2.3	25.2	13.8	4.6	8.6	22.5	10.9	1.9	100.0
성별	여성	13.4	5.1	28.9	11.7	6.5	6.4	18.7	7.4	1.9	100.0
	남성	8.7	3.0	32.0	11.6	4.0	9.6	15.3	12.8	3.0	100.0
연령	29세 이하	16.5	5.5	33.4	9.0	5.7	3.6	20.2	4.5	1.5	100.0
	30~39세	12.7	5.7	29.6	11.3	6.9	5.0	18.0	8.3	2.5	100.0
	40~49세	10.9	3.8	27.0	13.9	6.3	6.4	17.8	11.2	2.6	100.0
	50~59세	10.6	3.6	29.4	11.1	4.3	13.1	16.8	9.7	1.4	100.0
	60세 이상	10.2	2.0	32.7	12.6	4.9	16.1	13.9	6.4	1.3	100.0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	16.3	7.5	35.1	7.3	4.0	6.9	15.9	4.3	2.6	100.0
	5~10년 미만	15.1	5.9	34.4	8.8	6.3	5.0	15.9	6.2	2.3	100.0
	10~15년 미만	11.8	4.5	29.4	12.4	5.8	7.3	18.8	8.5	1.7	100.0
	15년 이상	9.7	3.1	24.5	14.4	6.4	8.7	19.0	11.8	2.4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238-239.

나) 구직시 어려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던 결혼이민자·귀화자 여성의 구직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어려움 없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해 구직활동을 한 이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원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근처에 일자리가 없는 문제(34.6%), 일자리 관련 정보 부족 및 취업 방법을 모르는 문제(27.1%), 자녀나 가족 돌봄 문제(26.8%)의 순이다. 특히 자녀나 가족 돌봄 문제는 26.8%로 남성(4.1%)보다 약 6배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244-245)(표 III-2-5 참조). 이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있어 자녀돌봄 부담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2-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구직시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명)

		어려움 없음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자녀 또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근처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모국 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해서	한국 에서의 경력이 부족 해서	일자리 관련 정보가 부족 하거나 취업 방법을 몰라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가족이 반대 해서	기타
전체		6.3 (675)	16.7 (1,786)	23.0 (2,457)	43.0 (4,608)	34.0 (3,639)	6.2 (663)	15.6 (1,673)	25.8 (2,763)	8.2 (873)	2.3 (241)	6.2 (668)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5.0	19.0	26.5	40.7	36.5	6.0	15.8	28.8	7.9	2.6	6.1
	기타귀화자	12.1	6.7	7.6	53.2	23.2	6.9	14.9	12.6	9.4	0.5	6.9
성별	여성	5.8	18.5	26.8	40.7	34.6	4.7	14.4	27.1	8.0	2.7	6.3
	남성	8.9	7.9	4.1	54.5	31.2	13.5	21.8	19.5	8.8	0.2	6.0
연령	29세 이하	9.2	29.5	30.7	32.7	38.8	4.8	15.0	31.2	5.6	2.3	0.2
	30~39세	3.8	17.6	37.9	44.4	33.2	7.6	16.8	25.3	13.1	2.9	1.6
	40~49세	7.1	12.4	20.2	41.4	34.7	6.9	20.8	25.2	7.9	3.6	1.7
	50~59세	5.4	12.1	2.4	58.0	34.9	4.8	12.0	22.8	4.8	0.0	13.0
	60세 이상	7.2	0.9	0.0	37.0	17.9	5.9	3.4	21.3	5.1	0.0	42.6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	4.2	47.1	28.6	23.9	39.9	10.2	22.5	31.2	2.0	1.8	2.1
	5~10년 미만	2.1	30.9	37.5	42.4	33.7	6.1	18.2	35.4	13.8	4.0	0.0
	10~15년 미만	3.3	7.5	20.1	47.2	33.8	6.7	13.2	23.2	7.3	3.0	8.2
	15년 이상	13.8	5.5	12.6	45.2	32.4	4.3	14.0	19.3	6.6	0.2	10.5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245-246.

4) 결혼이민자 가구의 자녀 수 및 연령분포

결혼이민자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02명으로 모든 가구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가 1명인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0명(32.5%), 2명(23.9%), 3명 이상(4.7%) 순이었다(여성가족부, 2019: 41) (표 III-2-6 참조).

〈표 III-2-6〉 다문화가구 자녀 수

(단위: %, 가구)

		0명	1명	2명	3명 이상	합계	평균
전체		36.7 (112,791)	36.5 (111,940)	22.5 (68,945)	4.3 (13,319)	100.0 (306,995)	0.95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32.5	38.9	23.9	4.7	100.0	1.02
	기타귀화자	62.2	21.9	13.9	1.9	100.0	0.56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 42.

결혼이민자 가구의 평균 자녀 연령은 약 8.1세, 기타귀화자는 약 10.2세로 결혼 이민자 가구의 자녀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여성가족부, 2019: 42)(표 III-2-7 참조).

〈표 III-2-7〉 다문화가구 자녀의 연령 분포

(단위: %, 가구)

		6세미만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18~24세	25세이상	합계	평균
전체		39.0 (103,372)	21.9 (57,889)	16.3 (43,248)	8.6 (22,787)	5.8 (15,469)	4.9 (13,020)	3.4 (8,948)	100.0 (264,733)	8.32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39.6	22.3	16.7	8.6	5.3	4.2	3.2	100.0	8.13
	기타귀화자	33.3	17.7	13.1	8.2	10.8	11.9	5.0	100.0	10.21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 43.

5) 자녀 돌봄

가) 기관 이용

미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관 이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 가구의 75.9%는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44)(표 III-2-8 참조).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학교 정규수업 후 교육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 가구의 자녀들이 기타귀화자 자녀들보다 초등돌봄교실(32.0%)과 방과후학교(58.6%)의 참여 비율은 높은 반면, 사교육 참여 비율(49.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45)(표 III-2-9 참조).

〈표 III-2-8〉 다문화가족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

(단위: %, 명)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냄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음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도 받지 않음	잘 모르겠음	합계
전체		76.0 (78,520)	20.2 (20,850)	3.0 (3,131)	0.8 (844)	100.0 (103,345)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75.9	20.1	3.1	0.8	100.0
	기타귀화자	76.9	20.6	2.0	0.5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 45.

〈표 III-2-9〉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의 학교 정규수업 후 교육활동(복수응답)

(단위: %, 명)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사교육(학원, 과외, 공부방 등)	기타
전체		31.6(17,528)	58.1(32,247)	50.0(27,765)	7.2(3,995)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32.0	58.6	49.5	7.3
	기타귀화자	26.2	50.6	57.0	5.2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 46.

나) 자녀양육의 어려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들이 부모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5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와 6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5세 이하 자녀양육에서 어려운 점으로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26.9%)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에게 한글을 직접 가르치기 어려워서(26.3%), 배우자나 다른 가족과의 의견 차이(12.8%), 한국 유치원, 학교에 대해 잘 몰라서(9.1%) 등의 순이고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21.8%이었다(여성가족부, 2019: 142). ‘바쁠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은 남성(24.9%)보다는 여성(27.2%)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30대(31.3%)와 더불어 50대(34.9%)에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내 거주 기간이 길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렵다는 응답은 남성(12.4%)보다 여성(28.1%)에게서 더 높다. 한국어 교육의 어려움은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여성가족부, 2019: 143)(표 III-2-10 참조).

〈표 III-2-10〉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5세 이하 자녀양육의 어려움

(단위: %, 명)

		어려움 없음	자녀 양육에 대해 배우자나 가족과 의견 차이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잘 모름	자녀 양육에 대한 내 의견을 주위 사람들이 무시	기타	합계
전체		21.8 (18,507)	12.8 (10,876)	26.9 (22,877)	26.3 (22,321)	9.1 (7,689)	0.8 (691)	2.3 (1,986)	100.0 (84,948)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21.5	12.6	26.4	27.5	8.8	0.8	2.3	100.0
	기타귀화자	25.3	15.3	33.2	10.7	11.8	0.8	2.9	100.0
성별	여성	20.4	12.4	27.2	28.1	8.8	0.8	2.3	100.0
	남성	32.7	15.9	24.9	12.4	10.9	0.9	2.4	100.0
연령	29세 이하	18.7	13.4	19.8	35.5	9.8	0.7	2.0	100.0
	30~39세	23.1	12.1	31.3	21.5	8.6	0.9	2.5	100.0
	40~49세	25.4	13.7	30.0	18.2	9.1	0.8	2.8	100.0
	50~59세	36.2	9.9	34.9	14.7	0.4	0.0	3.9	100.0
	60세 이상	0.0	0.0	0.0	0.0	0.0	0.0	0.0	100.0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	20.3	13.3	19.0	35.1	9.3	0.7	2.3	100.0
	5~10년 미만	18.9	12.8	26.3	30.3	9.2	0.7	1.9	100.0
	10~15년 미만	25.1	11.1	33.7	17.4	9.0	1.2	2.5	100.0
	15년 이상	32.8	16.0	33.5	4.8	7.7	0.9	4.4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144-145.

6세~24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대한 정보 부족(47.1%)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교육비·용돈 등 비용 부담(40.9%), 게임·스마트폰·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25.1%), 자녀와의 대화 부족(16.3%), 학부모회 등 학부모 활동 참여의 어려움(14.9%)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12.8%였다(여성가족부, 2019: 145). 여성들은 진학·진로에 대한 정보부족(48.0%)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고, 남성들은 경제적 비용 부담(46.8%)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의 진학·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응답자에게

서도 완화되지 않는다(체류기간 5년 미만 48.0%, 15년 이상 48.8%)(여성가족부, 2019: 146)(표 III-2-11 참조).

〈표 III-2-1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6~24세 자녀양육의 어려움(1+2순위)

(단위: %, 명)

		어려움 없음	교육비, 용돈 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 부담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자녀와의 대화 부족	학부모회, 봉사 활동 등 학부모 활동 참여의 어려움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	자녀의 음주, 흡연, 가출 등의 문제	기타
전체		12.8 (12,222)	40.9 (38,954)	47.1 (44,863)	16.3 (15,574)	14.9 (14,174)	25.1 (23,884)	0.4 (400)	1.8 (1,753)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12.9	40.4	47.0	16.4	15.1	25.0	0.4	1.9
	기타귀화자	12.0	45.8	47.7	16.1	12.2	25.7	0.1	1.7
성별	여성	12.5	40.1	48.0	15.2	15.6	25.6	0.4	1.9
	남성	15.1	46.8	39.1	25.3	8.6	20.6	0.2	1.3
연령	29세 이하	14.0	35.2	46.6	16.5	19.7	19.3	0.0	1.1
	30~39세	12.5	38.4	47.6	15.7	16.1	26.6	0.4	1.9
	40~49세	13.5	43.4	45.6	16.6	12.5	25.7	0.5	2.1
	50~59세	9.4	53.2	52.1	19.4	11.5	21.2	1.0	1.6
	60세 이상	26.2	49.0	44.2	14.2	0.4	10.6	0.0	2.0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	13.3	32.9	48.0	21.8	19.3	23.5	0.0	1.6
	5~10년 미만	15.1	34.3	43.6	17.2	17.3	22.3	0.4	2.2
	10~15년 미만	11.8	40.3	48.8	14.6	16.7	26.0	0.3	2.1
	15년 이상	11.8	40.3	48.8	14.6	16.7	26.0	0.3	2.1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146-147.

다) 모국 가족에 의한 자녀돌봄

자녀 양육을 위해 모국의 부모형제를 한국으로 모셔온 적이 있다는 응답은 35.3%였으며, 남성(21.8%)보다 여성(37.1%)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자녀를 모국의 부모 형제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였는데, 여성(8.4%) 보다는 남성(10.2%)의 응답률이 다소 높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45.9%)와 30대(36.4%)에서 부모형제를 한국으로 모셔왔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어린 자녀를 양

육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 돌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모국의 부모형제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녀를 모국의 부모형제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0대(11.2%)와 50대(11.4%) 연령층, 그리고 한국에 오래 체류한 응답자(15년 이상 11.7%)에게서 높은데, 이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여성가족부, 2019: 148) (표 III-2-12 참조).

〈표 III-2-12〉 자녀 양육을 위해 모국의 부모형제를 초청하거나 자녀를 모국의 부모 형제에게 보낸 경험(복수응답)

(단위: %, 명)

		해당 없음	모국의 부모형제를 한국으로 모셔온 적이 있다	자녀를 모국의 부모형제에게 보낸 적이 있다
전체		59.9(93,766)	35.3(55,303)	8.6(13,525)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59.1	36.1	8.8
	기타귀화자	68.9	26.9	6.8
성별	여성	58.4	37.1	8.4
	남성	71.1	21.8	10.2
연령	29세 이하	51.4	45.9	5.9
	30~39세	59.5	36.4	8.4
	40~49세	65.9	26.7	11.2
	50~59세	76.0	16.4	11.4
	60세 이상	61.9	32.4	6.1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	60.4	36.6	5.3
	5~10년 미만	57.3	38.9	7.2
	10~15년 미만	57.9	36.9	9.5
	15년 이상	67.2	26.1	11.7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149-150.

6) 혼인상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73.5%로 가장 높고, ‘이혼·별거’ 16.4%, ‘배우자 사망’ 4.8%, 그리고 ‘미혼’이 5.2%로 나타난다(여성가족부, 2019: 68).

혼인 상태는 연령, 국내거주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유배우 비율은 20대와 30대의 경우 약 80%에 이르지만 40대 연령층에서는 75.5%, 50대 58.6%, 60세 이상은 45.0%로 감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의 비율은 20대 0.8%이지만 60세 이상 26.3%로 증가하며, 이혼·별거자 비율도 20대(6.1%)에 비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30대 11.5%, 40대 19.7%, 50대 31.3%, 60세 이상 28.1%).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한국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연령도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유배우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사별, 이혼·별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68)(표 III-2-13 참조).

〈표 III-2-1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혼인상태

(단위: %, 명)

		미혼	배우자있음	배우자사망	이혼·별거	합계
전체		5.2 (14,623)	73.5 (205,887)	4.8 (13,453)	16.4 (46,057)	100.0 (280,020)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0.0	79.5	4.5	16.0	100.0
	기타귀화자	35.3	39.0	6.5	19.2	100.0
성별	여성	3.2	74.5	5.4	16.8	100.0
	남성	14.7	68.7	1.8	14.8	100.0
연령	29세 이하	13.1	79.9	0.8	6.1	100.0
	30~39세	5.9	80.2	2.3	11.5	100.0
	40~49세	1.8	75.5	3.0	19.7	100.0
	50~59세	0.6	58.6	9.4	31.3	100.0
	60세 이상	0.6	45.0	26.3	28.1	100.0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	1.2	96.7	0.3	1.8	100.0
	5~10년 미만	3.9	84.8	3.0	8.3	100.0
	10~15년 미만	5.8	69.1	5.2	19.9	100.0
	15년 이상	7.7	57.7	8.0	26.6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68-69.

7) 주관적 건강상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기준에 3.8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여성가족부, 2019: 272). 성별로 보면, 남성(3.83점)이 여성(3.79점)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국내 거주 기간

이 짧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다(여성가족부, 2019: 274)(표 III-2-14 참조).

〈표 III-2-1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점)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합계	평균
전체		1.8 (5,104)	9.5 (26,482)	20.9 (58,527)	42.6 (119,370)	25.2 (70,536)	100.0 (280,020)	3.80
다문화 가구유형	결혼이민자	1.7	9.1	20.8	43.4	25.1	100.0	3.81
	기타귀화자	2.8	11.5	21.5	38.5	25.8	100.0	3.73
성별	여성	1.9	9.5	20.9	43.1	24.7	100.0	3.79
	남성	1.6	9.5	20.7	40.6	27.6	100.0	3.83
연령	29세 이하	0.1	2.7	14.9	44.1	38.3	100.0	4.18
	30~39세	0.4	3.6	17.2	48.3	30.6	100.0	4.05
	40~49세	1.2	10.8	23.0	45.1	20.0	100.0	3.72
	50~59세	3.7	20.2	30.6	32.6	12.9	100.0	3.31
	60세 이상	12.7	32.2	29.3	22.0	3.7	100.0	2.72
국내 거주 기간	5년 미만	0.1	2.7	13.9	45.2	38.1	100.0	4.18
	5~10년 미만	0.3	5.0	16.9	47.0	30.7	100.0	4.03
	10~15년 미만	2.0	11.2	22.5	42.5	21.8	100.0	3.71
	15년 이상	3.8	14.8	25.9	37.3	18.3	100.0	3.51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274-275.

배우자들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5점 척도(1: 매우 나쁘다, 5: 매우 좋다)로 측정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1%가 현재 건강상태를 좋은 편(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68.6%)이 여성(65.3%)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출신×성별로는 한국출신 아내(73.5%)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좋고, 한국출신 남편(68.9%), 외국출신 남편(62.9%), 외국출신 아내(56.1%)의 순으로 나타나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여성가족부, 2019: 451).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어, 20~30대의 경우 80% 이상이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반면, 40대는 71.5%, 50대는 59.5%, 60세 이상은 45.5%로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여성가족부, 2019: 452)(표 III-2-15 참조).

〈표 III-2-15〉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점)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합계	평균
전체		1.8 (4,050)	7.5 (16,850)	22.5 (50,416)	46.9 (104,755)	21.2 (47,507)	100.0 (223,578)	3.78
성별	여성	2.0	11.1	21.6	45.0	20.3	100.0	3.70
	남성	1.8	6.9	22.7	47.2	21.4	100.0	3.80
출신*성 별	한국출신 남편	1.7	6.6	22.8	47.5	21.4	100.0	3.80
	한국출신 아내	1.2	8.4	16.9	47.8	25.7	100.0	3.88
	외국출신 남편	4.3	12.0	20.7	40.6	22.3	100.0	3.65
	외국출신 아내	2.8	14.2	26.9	41.8	14.3	100.0	3.51
연령	29세 이하	0.3	1.2	13.2	40.1	45.0	100.0	4.28
	30~39세	0.2	2.5	14.7	52.6	29.9	100.0	4.10
	40~49세	1.0	5.0	22.4	48.9	22.6	100.0	3.87
	50~59세	2.6	10.6	27.3	43.7	15.8	100.0	3.60
	60세 이상	6.8	21.6	26.0	36.7	8.8	100.0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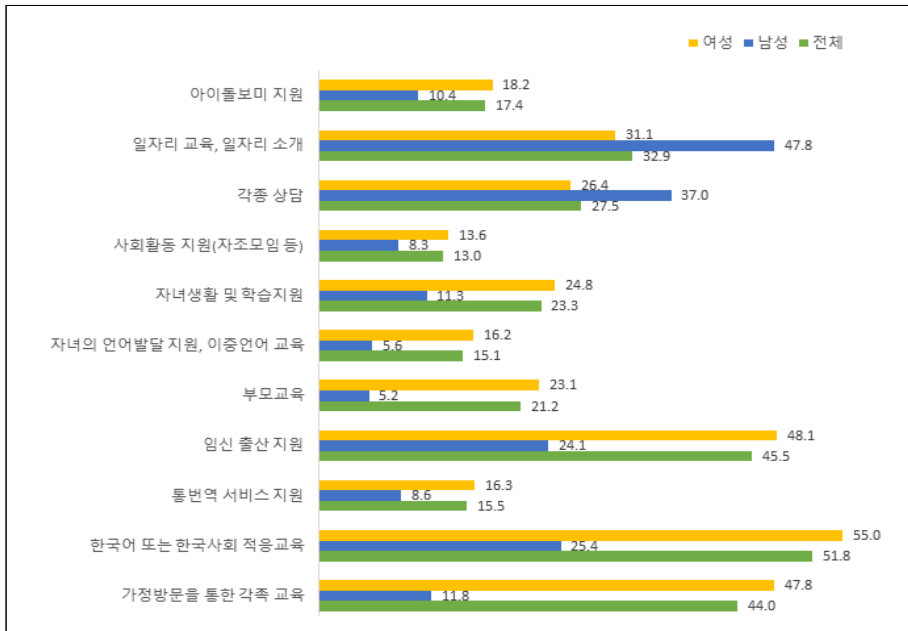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452-453.

8)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각종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이용해본 서비스를 살펴보면,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51.8%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임신·출산 지원(45.5%),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교육(44.0%), 일자리 교육·일자리 소개(32.9%)의 순이다(여성가족부, 2019: 249).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 통번역 서비스, 임신·출산 지원, 부모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 지원, 사회활동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 등 대부분의 지원 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이용하지만, 각종 상담과 일자리교육·일자리 소개는 남성이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가족부, 2019: 250)(그림 III-2-3 참조).

[그림 III-2-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원 서비스별 이용 경험(복수응답)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p. 251-252 표를 그림으로 도식화 함.

나. 취업 및 자녀양육 면담조사 분석

1) 취업 현황

면담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현재 직장의 근속기간은 사례 1은 3년 8개월, 사례 2는 8개월, 사례 3은 6개월, 사례 4는 1년 4개월, 사례 5는 4년이였다. 직종은 5사례 모두 단순노무 종사자였다. 근로계약 형태는 사례 4는 정규직이고, 사례 2와 사례 5는 비정규직 상용직이며, 사례 1과 사례 3은 비정규직 임시직이였다.

가) 근무요일·시간·급여 등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근무시간은 대부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근무로 사례 1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일을 했고, 사례 3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대체로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다.

사례 2, 사례 4, 사례 5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가끔 야근

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4의 경우 야근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야근은) 만약 집에 애들이 안 아프면 해요. 왜냐면, 애들도 조금 컸으니까 어머니랑 남편이 봐줄 수 있잖아요. 8시까지 조금 해요(사례 4).

월평균 임금은 대부분 최저시급으로 130~18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이 있는 사례 2, 사례 4, 사례 5의 경우 야근 수당이 추가되는 정도였다.

(임금은) 180만원. 기본이잖아요. 최저로. 그거밖에 안돼요. 야근하면 여기서 조금 더 나오죠(사례 4).

사례 1은 어린이집에서 조리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자체어린이집연합회와 지자체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급여를 지원하고 있었다. 계약직으로 11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근로 시간이나 급여 등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사례 1은 어린이집 조리도우미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배우자의 펜션 일을 돕고 있었다.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다 좋아요(사례 1).

집에서 펜션해서, 펜션 청소요……(돈은) 손님 많이 없으면 안 줘요. 좀 있으면 10만 원 주고(사례 1).

사례 2는 첫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었고, 친정어머니가 손자녀 양육을 위해 베트남에서 오셔서 야근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직장이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직장내 고향(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점, 급여 수준 등 전반적으로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급여는) 그냥 생활할만해요……한국 사람도 있고, 고향 친구들도 있고(사례 2).

사례 3은 직장이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배우자가 매일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었다. 두 명의 자녀가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스스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이) 차로 데려다주고 해요. 출퇴근해주고. 차로 편도 5분 정도. 쓸비치 있는 쪽(사례 3).

사례 4는 고구마나 누룽지를 만들거나 담는 일을 주로 하다가 현재는 기계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직장에 야근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좋았고, 직장이 차로 10-15분 정도 걸리는 등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례 5는 2018년부터 화장품 공장에 다니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장이 어려워져서 잠시 식품 공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화장품 공장에서 다녔어요. 여기서도 아르바이트해요……화장품 공장은 4대 보험 내요. 아직 화장품 공장 아직 안 끝나서, 일이 없어서, 잠깐 알바로 여기서 하고 있어요(사례 5).

나) 취업경로

사례 3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

여성 일하기 센터에서 소개해줬어요(사례 2).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아는 선생님이 있어요. 전에 다문화센터 다니는 분이어서, 그분이랑 연락해서, 처음에 연락하다가, 선생님이 한번 일해보라고 연락 왔는데, 못한다고 한참 있다가, 여기 자리가 있다고 연락 왔어요(사례 4).

여성회관에서 초대해서요. 여성일자리센터(사례 5).

사례 3은 지인 소개로 현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는 언니. 친구 소개로. 거기가 보통 다 베트남 사람이니까(사례 3).

2) 자녀양육 현황

면담 참여자 모두 영유아 자녀가 있었고, 영유아 자녀만 둔 사례는 사례 2, 사례 3, 사례 5였다. 영유아기 자녀와 학령기 자녀를 둔 사례는 사례 1, 사례 4였다.

가) 영유아 자녀

면담 참여자들의 영유아 자녀들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사례 2는 자녀의 등원은 본인이 직접 했고, 하원은 친정어머니가 도와주고 계셨다. 사례 1과 사례 3의 경우 자녀의 등원은 배우자가 도맡아 하고 있었고, 하원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다. 사례 4는 등·하원 모두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다. 사례 5는 등원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고, 하원은 직접 자차로 하고 있었다. 사례 5의 경우 가끔 야근을 할 때는 어린이집에 야간 연장반을 이용하고 있었다.

남편이 애기 학교에 보내요. 남편이 애들 유치원 보내는 거 많이 도와줘요. 집에서 많이 도와줘요. 일하면 못 도와주는데, 집에 있으면 많이 도와줘요(사례 1).

아침 8시 20분에 여기 오고, 제가 같이 데려왔어요……끝나면, (4시에서 5시 사이에) 오후에 친정엄마가 데리러 와요(사례 2).

(등원은) 남편이 아이도 데려다 주고……(하원은) 통근버스로 옵니다(사례 3).

(등원은) 8시 10분, 15분에 집 앞에 차가 와요……(하원은) 6시 반. 일 끝나면 데리러 와요(사례 5).

가사일의 경우 면담 참여자들이 거의 하는 편이었지만, 자녀 숙제 도와주기, 책 읽어주기 등은 대체로 배우자와 함께 하고 있었다. 사례 3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서 배우자가 어린이집과 소통하는 등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여하고 있었다.

우리 남편도 도와줘요. 시어머니는 다리 아파서 못 걸어서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설거지는) 안 해요. 술 잘 먹어요. 펜션 손님 갔다 오면 청소도 같이 해요(사례 1).

(둘째 자녀는) 남편하고 어머니가 가게에서 봐요(사례 4).

(남편 응답) 아이를 그렇게 늦게까지 맡길 생각은 없어요. 끝나면 바로 데리고 와서 제가 보는 게 낫지. 어쩔 수 없을 때는 맡기는 게 좋겠죠.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사례 3).

(시아머니께서) 방 안에서 데리고 있는 거죠. 그냥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애들도 걸어 다니고 하니까. 힘이 조금 부치긴 하죠(사례 3).

남편이 제가 야근할 때는 애들 목욕 미리 해주고, 밥 먹여줘요. 제가 퇴근 8시에 할 때는 알아서 다 하고, 제가 나와서 제 몸만 챙기고 그렇게 해요(사례 4).

아빠가 책 사 와서, 그림책 보고 이야기해줘요. 동물이랑 과일 알려줘요(사례 3).

사례 2의 경우 둘째를 출산하고 베트남에서 친정어머니가 오셨고, 현재까지 같이 살면서 자녀양육을 도와주고 있었다. 사례 3도 첫째 출산 후 친정어머니께서 베트남에서 오셔서 3개월간 산후 조리 도움을 받았다.

시아머니가 몸 안 좋으셔서 애기 못 봐요……(친정어머니가) 둘째 낳자마자, 왔어요. 27개월이니까 2년 됐어요……딸 보고 싶어서 왔다고……엄마가 아기 보고 바쁘지 않으면 이런 거 도와주고, 아기가 울면 아기 보느라 못 도와주고. 아기만 보고(사례 2).

출산할 때 처음에 왔었죠. 잠깐 왔다가. 큰애 때만 봐주고(사례 3).

사례 2와 사례 5의 경우 주말부부였는데, 사례 2의 경우 배우자가 집에 있을 때는 자녀들을 잘 돌봐주고, 자녀 교육에 관해서 배우자와 상의하는 편이었다.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신랑하고 같이 얘기하고, 신랑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다 해요. 신랑이 우리 아기 교육을 많이 생각해요(사례 2).

사례 5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편찮으셔서 자녀돌봄이나 가사 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고, 퇴근 후 혼자서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자녀가 연령에 비해 언어가 늦어서 현재 어린이집 교사의 추천으로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다.

할머니 밥은 할머니 알아서 해 드세요. 아이랑 제 식사만 제가 해요(사례 5).

(언어가) 연령에 비해서 조금 늦기는 해요. 그래서 언어바우처 지원을 받아요(사례 5).

나) 초등 저학년 자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사례는 사례 1과 사례 4였다. 사례 1의 경우 자녀(9세)의 등교는 배우자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고, 근무가 오후 3시 30분에 마쳐서 돌봄 공

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 사례 4의 자녀(8세)는 하교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갔다가 오후 6시 30분쯤 집에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초등 돌봄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마술 등을 무료로 배우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요. 학교 마치고 거기에 있다가 6시 반에 집에 와요……거기 선생님이 데리러 와요……저녁 6시 반까지. 그리고 집에 또 데려다줘요……놀이 교육도 받고 집으로 와요 (사례 5)

다) 교육·보육비 및 사교육비

사례 2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았다. 사례 2는 현재 첫째 아이(7세)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올해부터 군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지원받아서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은 없었다.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으로 영어, 바둑, 코딩, 체육, 창의 블록 등을 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매월 3만 5천원을 내고 방문학습(한글, 수학)을 하고 있었다.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했어요. 한 달에 3만 5천 원 밖에 없어요……집에서 학습지 하고 있어요……한글이랑 수학이요(사례 2).

사례 1은 두 자녀 모두 따로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주 2회 2시간씩 놀이지도사가 방문하여 부모-자녀 간 놀이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사례 4는 첫째 아이가 지역아동센터를 무료로 다니고 있어서 따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없었다. 사례 4의 경우 사교육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아직 1학년이라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교육을) 생각하는데, 첫째가 아직 1학년이잖아요. 제가 아는 한국 언니가 첫째랑 같은 반인데, 그 언니는 벌써 셋째니까, 그 언니하고 저하고 같은 회사 다니면서 언니 보고 우리 아이들 학원 안 보내도 되냐고 물어보면, 그 언니도 아동센터만 다니니까. 아직까진 1학년 이니까, 첫째가 한국어랑 수학도 잘하고 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내도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안 보냈어요(사례 4).

3) 일·가정 양립 현황

본 심층면담 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먼저, 면담 참여자들은 모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가 명확하게 있었다.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모습도 보였다. 취업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돈을 벌어야 애기 먹고 싶은 거 사줄 수 있어요(사례 2).

월급 받아서 애들 옷도 사주고, 주말에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그리고 매달 라오스에도 보내야 해요(사례 4).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일도 다 아니까. 거기서 친한 언니들 만나고 생활하는 것도 좋아요...언니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양보하고 도와주면서 하니깐 좋아요(사례 4).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의 이해와 협조이다.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에서는 가사 및 자녀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된 비율이 높았지만, 본 심층면담 결과에서는 배우자가 가사 및 자녀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일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남편이 아이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 보내는 거 많이 도와줘요. 집에서 많이 도와줘요. 일하면 못 도와주는데, 집에 있으면 많이 도와줘요. 아이 책도 읽어줘요(사례 1).

남편이 차로 데려다주고 해요. 차로 10분정도 걸리는데 출퇴근을 매일 해줘요(사례 3).

남편이 제가 야근할 때는 애들 목욕 미리 해주고, 밥 먹여줘요. 제가 퇴근 8시에 할 때는 알아서 다 하고, 제가 나와서 제 몸만 챙기고 그렇게 해요(사례 4).

또한, 사례 1과 사례 5를 제외하고는 자녀양육 및 가사일에 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사례 2는 둘째를 출산하고, 친정어머니가 본국에서 오셨고 현재까지 자녀양육을 도와주고 있었다. 사례 3도 첫째 출산 후 친정어머니가 본국에서 오셔서 3개월간 산후조리를 도와주셨다고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에서 본국 가족 초청제도가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양육 및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것처럼, 이들도 친정어머니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반면, 사례 5는 주말부부이면서, 시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서 일과 가정을 유지하는 일이 몹시 힘든 일임을 강조하였다.

엄마가 많이 도와줘요. 제가 돈은 못 드리지만... 친정어머니가 얘기 봐주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도와줘요(사례 2).

시어머니 연세가 86세예요. 허리도 잘 못 펴시고...방 안에서 애들 데리고 있는 거죠. 이제 애들이 걸어 다니고 하니까...힘이 조금 부치긴 하죠(사례 3).

저는 반찬거리 많이 안 챙겨요. 어머니가 워낙 깔끔해서 요리도 잘하시니까.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시고, 밑반찬 다 어머니가 해줘요. 저는 그냥 토요일, 일요일만 아침, 점심, 저녁만 챙기면 되요. 저는 주말 담당이에요(사례 4).

어머니 연세도 있으니까 2년 정도 더 일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지금 연세도 있으시니까, 무릎도 아프시고 몸이 아프시다고 하시니까 2년만 더 일해보고, 어머니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해요(사례 4).

(남편이) 주중에 없으니까 애기 키우기가 힘들어요. 애기가 말도 잘 안들어요(사례 5)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제활동 의지 및 가족의 이해와 협조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에 정착하고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5사례 모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거나 현재까지도 받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한국어 교육 외에도 한국 사회 적응 교육, 부모교육, 운전면허 교육, 일자리 교육 및 소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보육기관, 지인을 통해 취업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한국어 교육 받고 있어요. 한국어 4단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언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가르쳐줘요(사례 2).

제가 한국어도 잘 못하고.. 의사소통도 어렵고.. 문화도 너무 많이 달라서 처음에 힘들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해서 배우고, 생활하는거 아기 키우는거 많이 배웠어요(사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아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한번 일해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기 자리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사례 4).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사례 1).

IV

결론 및 정책제언

01 결론

02 정책제언

IV. 결론 및 정책제언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1. 결론

오늘날 북한이탈주민의 72%를 차지하는 탈북 여성의 경제적 상황은 일반 국민과 비교해서 뿐만 아니라 탈북 남성에 비해서도 열악하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 여성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탈북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집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생계가 어려워 한국까지 오게 된 탈북민들이 많은데 한국에 와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을 추진해 왔고, 매년 취업률이 증가하는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다(표 II-1-5).

그러나 탈북 여성은 탈북 남성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여성보다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았다. 본 연구는 한국으로의 '이주'라는 공통 경험에 있는 두 집단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현황을 비교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대상 규모에서 결혼이민자는(약 16만 9천명) 탈북민(약 3만 3천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28개가 설치되어 있지만¹⁵⁾, 탈북 여성을 위한 하나센터는 전국에 25개가 설립되어 있다(통일부, 2021: 156). 정책수요자 규모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 집단 모두 높다. 탈북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라면 결혼이민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로 결혼이민자 여성 비율이 더 높다.

셋째, 결혼이민자 여성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약 74%이지만, 탈북 여성은

1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sSn=704809 (검색일: 2021. 11. 28)

2020년 기준으로 절반이 채 안 되는 46.4%이다(남북하나재단, 2021b: 155). 실제 탈북 여성은 사실혼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실태조사 문항에는 사실혼을 포함해서 배우자 유무를 묻지만, 답변을 솔직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이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에 있어 결혼을 전제로 한국에 이주한 결혼이민자 여성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탈북 여성의 남한 입국 동기는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탈북 여성은 남한 입국 전에 북한이나 중국(제3국)에서 결혼한 경우가 많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대부분은 한국 배우자와의 결혼이 초혼이지만, 탈북 여성은 한국 배우자와 재혼, 삼혼의 경우도 적지 않다. 남한에서 30대 중후반 이후 영유아 자녀를 출산하는 탈북 여성은 재혼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탈북 여성 5명이 참여한 본 면담 조사에서 사례 5는 40대 중반으로 삼혼을 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인공수정으로 셋째를 출산하였다.

넷째, 이처럼 탈북 여성은 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본 면담 조사의 참여 기준인 “영유아~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취업모”에 부합한 5명의 탈북 여성의 평균 연령은 41.8세인 반면, 5명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평균 31.8세로 연령 차이가 상당히 컸다. 두 집단 여성 모두,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는 1.02명으로 실태조사에서 공식 집계되었으나, 탈북 여성의 자녀 수에 대한 공식 자료는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 수만 평균 2.3명으로 보고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21b: 54).

다섯째,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탈북 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의 관련 기본계획을 보면, 탈북민은 취업 정책을, 결혼이민자는 가족정책을 좀 더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서 취업 정책으로 정책과제 수준에서 “4.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통한 자립, 자활 지원”로 명시되어 있다(그림 II-1-2). 이에 비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수준에는 “취업”이란 직접적 용어가 아닌 “3.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자 확대”로 명시되어 있고, 그보다 하위 수준인 세부 내용에서 “취·창업 지원서비스 내실화”가 제시되어 있다(표 II-1-9 참조). 이에 반해, 가족 지원은 탈북민 기본계획에는 정책과제 “5.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전한 가정형성 지원”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과제로 들어가면 가정보다는 탈북, 무연고 청소년 중심의

세부과제들이 주로 기술되어 있다(그림 II-1-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계획명에 걸맞게 총 5개 정책과제 중 3개 과제명에 ‘가족’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탈북민의 취업 정책에는 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 등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표 II-1-4), 결혼이민자 취업정책에는 없다. 초기 정착에 기초생활수급을 지원하는 정책도 결혼이민자에게는 없다.

여섯째, 탈북 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현황을 비교하면 두 집단 모두 일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건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 모두의 건강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다음은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탈북 여성,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직장, 교육·보육기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여성의 근무시간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서로 잘 맞을 때, 일·가정 양립이 수월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돌봄 공백 시간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근무시간과 교육·보육기관의 이용시간의 부합 정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근무조건에 맞는 직장은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월 200만원이 안 돼서 생활비로 소비하고 저축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벌려면 야근, 특근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녀돌봄공백 시간이 발생해서 자녀의 안전, 식사, 학습지원 등을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이들 가정의 초등 저학년 자녀들은 혼자서 등하교를 하며, 초등 돌봄도 오후 4~5시 이전까지만 이용해서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 동안은 태권도, 국어, 수학, 학습지 학원을 “혼자서 알아서 시간 맞춰” 다니고 있었다. 본 면담 조사에 참여한 두 집단의 취업경로를 비교하면, 탈북 여성은 지인 소개, 인터넷 검색, 하나센터 등 취업경로가 다양했으나 결혼이민자 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을 하였다.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연차, 월차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배우자가 가사나 육아를 지원하는 경우가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한층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정책, 육아친화적 회사의 배려도 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서 대리양육자가 부재한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은 여성과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양육을 해결할 수 있는 외적 조건들이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다음 표는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VI-1-1〉 탈북 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주요 지표 비교분석

	탈북민(탈북여성)	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 여성)
인구수 (명)	33,788명/24,333명(2021.6. 기준) *여성비율: 72.0/%	168,594명/137,878명(2020년 기준) *여성비율: 81.8/%
경제활동 참가율	60.1%(55.7%)	69.5%(65.5%)
실업률	4.7%(11.4%)	4.5%(4.6%)
취업지원 정책	- 취업장려금, 자산형성제도 - 정부 3차 기본계획에서 취업정책 비중 큼	-비용지원 제도 X -정부 3차 기본계획에서 가족정책 비중 큼
직종 (여성)	제조업 20.4% > 숙박·음식점 > 서비스업 *본 면담조사 참여자중 상용근로자는 생산직/단순노무 근로자가 많았음.	단순노무 30.6%, 서비스 20.2%
직업교육 훈련/지 원서비스	88.7%가 이수함 관련 분야 종사한 적 없음 53.5%	한국어 및 적응교육, 임신출산부모교육, 일자리교육 서비스
종사상 지위 (여성)	상용직근로자(60.6%) > 임시직 근로자(13.0%)> 임용직근로자 *두 집단 모두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음(탈북여성 73.6%)	상용근로자(40.9%) > 임시근로자(24.7%) > 일용근로자
구직경로 (여성)	대중매체 > 탈북민 친인척 지인 > 한국인 지인 > 민간기관 *본 면담조사 참여 탈북여성은 지인소개, 하나센터, 대중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직 *본 면담조사 참여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	모국인 지인 > 대중매체 > 가족·친인척 > 한국인 지인
임금수준	200~300만원 미만 40.1%(여성 39.6%)	150~200만원 28.0%
배우자 유무	있음(사실혼 포함) 46.4% *본 면담조사 참여 탈북여성 5사례 중 2사례 한부모 가정/결혼이민자 여성 5사례 모두 배 우자 있음.	있음(사실혼 포함) 92.1%
가구원 상황	가구원수 2.3명(자녀수 공식통계 無) *한부모 가정이 많을 것으로 추정	자녀수 1.2명
여성취업 장애요인	육아부담(45.4%) > 여성에 대한 편견·차별> 가 족돌봄(육아제외) 건강이 나쁜 편이다(30.6%)	임금,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40.7%) >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 정보와 방법을 몰라서> 자녀 또는 가족 돌봄(26.8%) 건강이 나쁜 편이다(11.5%)
일·가정 양립 가능 요인	- 건강하고 일하려는 욕구가 강함(수급에 의존하지 않으려함) - 집, 직장, 어린이집(학교) 서로 가까이 있음 -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직장의 근무시간 부합도가 높음 *야간보육 거의 이용하지 않음(탈 북 가정은 돌봄공백을 위해 + 학원 병행 → 사교육비 발생, 안전사고 우려) 배우자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육아 및 가사일 분담할 때, 일·가정 양립에 더 유리 (탈북가정: 가사분담실태 부인부담 56.4%, 공평분담 35.4% / 배우자와 만족 69.0%) (결혼이민자가정: 가사분담실태 여성이 더 함 / 배우자와 만족 78.6%)	

	탈북민(탈북여성)	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 여성)
비고	- 가족자원 거의 부재(한부모 가정은 더 불리) - 북한 및 중국의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함 (돈을 버는 주요 이유 중 하나). - 자녀돌봄공백 시간 최소화 장치 필요 (아이돌보미서비스 활용) - 동일 언어 사용은 취업의 유리	- 가족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음 (배우자, 시댁 등): 친정이 외국이라도 한국에 와서 손자녀 돌봄을 할 수 있음. - 모국 가족에게 돈을 부치는 경우가 있으나, 육아를 하면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 국적 없음 59.1%

2. 정책제언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리양육자가 거의 없는 탈북 여성의 자녀양육의 가장 큰 버팀목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이다. 이는 결혼이민자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어린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의 거주지 배정 시, 집 가까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 지역을 우선 추천한다. 그리고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탈북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선 입소 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어린이집 1순위 입소순위 자격에 탈북 가정의 영유아를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개 오후 5시 이후 넘어서 자녀를 맡기는 것이 눈치가 보여 학원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이다. 현재 정부는 기본반과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연장 보육반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녁 시간까지 맘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는 요원해 보였다. 즉,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교사의 눈치도 보이고 자녀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제도 마련은 충분하다. 제도가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취업 활동을 하는 주양육자의 자녀를 저녁 시간까지(19시 30분) 보육하는 일은 당연한 서비스이자 책무임을 인식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캠페인 홍보활동을 제안한다.

셋째, 탈북 여성들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정책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비용부담이 커서 등으로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제2차에 이어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유일한 보육지원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다. 현장과 괴리되는 정책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넷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추진하려면 정책수요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혼자서 등하교를 하는 탈북 가정의 초등 저학년 자녀들의 안전과 돌봄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다섯째, 탈북 여성, 결혼이민자 여성 모두 취업 정보를 지인의 소개나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나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 고용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을 대중매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예컨대, 탈북민들이 많이 접하는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을 홍보한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탈북 여성, 탈북 가정, 자녀양육 관련 정책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탈북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특성이 세심히 반영되도록 지금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책입안자는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예전에 온 탈북민들이 결혼, 출산하면서 모집단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1.5).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 김미현 (2019).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6, 147-180.
- 김이선·최진희·황정미 (2018). 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화순 (2019). 분단체제 탈북민정책의 인식과 이행과제 : 배제적 통합의 영속화에 대한 비판. 이화젠더법학, 11(3), 67-106.
-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 남북하나재단 (2021a).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남북하나재단 (2021b).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 박원순·김동훈·김승진 (2016).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구축. 육아정책연구소.
- 박현성·홍달아기 (2016). 결혼이주여성의 일 가정 양립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3), 65-91.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 안일선 (2021).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취업환경 개선 방안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3), 111-133.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 (2021a).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 (2021b).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 유진희 (2020).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24(4), 199-218.

- 육수현·장주영 (2021). 가족초청제도의 사회통합 기여 가능성 탐색 : 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실무자 인터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5(2), 45-66.
- 이윤진·김화순·김민주 (2020).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이정림·김경미 (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구자연·최윤경·정정호 (2020).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I) :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이현주·장동헌 (2016). 결혼이주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4(3), 1-21.
- 정영애·김윤나 (2013). 탈북 여성 일·가정 양립 실태 연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조영아·김현아·김요완 (2014). 한부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적응 어려움과 대처 방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155-179.
- 최정호·최희 (2017). 인천시 북한이탈여성 취업지원 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통일부 보도자료 (2021.5.18.). 「제3차(2021~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참고 사이트】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취업지원사업운영
https://www.koreahana.or.kr/main_business/sub21.jsp(검색일: 2021.11.28.).
- 법제처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undefined>(검색일: 2021.11.23.)

법제처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undefined>(검색일: 2021.11.2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09(검색일: 2021. 11. 28)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검색일: 2021.11.28.)



부록

부록 1. 심층면담조사 질문지 (탈북 여성)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 파악을 위한

- 심층면담조사 질문지 -

면담일자: 2021. 0. 0.

연구참여자(피면담자):

면 담 자:

	본인	배우자
연령		
최종학력		
입국년도		
출신국가(배우자)		
결혼연도		
건강 및 장애유무		
자녀수 및 자녀연령		

1.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
-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데
-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구직 경로)
- 근무 일·시간, 월 급여, 종사자 지위
- 만족도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만족하는지: 급여? 시간? 거리?)

2.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이전에도 하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종류,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 지금 직업과 비교해서
- 이직을 한 주된 이유

3.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 참여했던 취업프로그램 제공기관, 개수, 종류, 기간, 지원금 유무, 만족도 등
 - 실제 취업하는 데 도움 정도(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
 - 미래행복통장 가입 현황?
4. 귀하가 취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도움 정도를 여쭙보겠습니다.
 - 배우자 및 가족의 도움 정도(육아, 가사일 등)
 - 배우자 및 가족 외 도움을 주는 사람?
5. 자녀의 양육 실태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 이용 시간,
 -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알게 된 경로, 이용 시작 시기, 이용 시간, 만족도 등
 - 누가 주로 자녀를 돌보는지? (하원 후 자녀돌봄)
 - 자녀 양육에서 어려운 점은?(예: 돌봄공백, (사)교육, 배우자와 의견차이 등)
6. 양육 및 취업 등 필요한 생활정보를 주로 어디서 구하시나요?
7.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2. 심층면담조사 질문지 (결혼이민자 여성)

결혼이민자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 파악을 위한 - 심층면담조사 질문지 -

면담일자: 2021. 0. 0.

연구참여자(피면담자):

면 담 자:

이름:	
연령:	(배우자:)
최종학력:	(배우자:)
출신국가:	
결혼연도:	
건강 정도 및 장애유무:	
자녀수 및 자녀연령:	

1.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
 -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지
 -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구직 경로)
 - 근무 일·시간, 월 급여, 종사자 지위
 - 만족도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만족하는지: 급여? 시간? 거리?)
2.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이전에도 하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종류,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 지금 직업과 비교해서
3. 정부의 다문화 가정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 참여했던 취업프로그램 제공기관, 개수, 종류, 기간, 지원금 유무, 만족도 등
 - 실제 취업하는 데 도움 정도(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
4. 귀하가 취업활동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도움 정도를 여쭙보겠습니다.

- 배우자 및 가족의 도움 정도(육아, 가사일 등)
- 배우자 및 가족 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5. 자녀의 양육 실태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 이용 시간,
-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알게 된 경로, 이용 시작 시기, 이용 시간, 만족도 등

6. 양육 및 취업 등 필요한 생활정보를 주로 어디서 구하시나요?

7.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지원방안